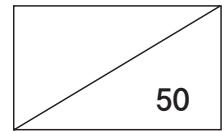


2014년 12월

14ZE2100-01-2130P



글로벌 ICT 선도를 위한 R&D 기획역량 제고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R&D Planning Capacity for Insuring
Global ICT Industry Leadership

제3부
ICT 융합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 차

제 1 장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제 1 절 국내 ICT R&D 및 정책 추진 동향 분석	3
제 2 절 해외 주요국의 ICT 진흥프로그램 등 정책 동향 분석	11
제 3 절 ICT 환경 변화와 법·제도 개선 방향	29
제 2 장 ICT 신기술 시장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37
제 1 절 민영화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 검토	39
제 2 절 공인인증서 관련 개선 방안 검토	57
제 3 절 SKT 통신망 장애의 원인 및 대책	63
제 4 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75
제 5 절 클라우드 컴퓨팅 및 DB 법안 검토	85
제 6 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검토	95
제 7 절 유료방송 합산규제 검토	103
제 3 장 정부 정책 추진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111
제 1 절 창조경제와 ICT 진흥	113
제 2 절 ICT 분야에 대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동향	117
제 3 절 ICT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현황 분석	131
< 참고문헌 >	149

[표 목차]

[표 1-1] 정부의 주요 ICT 정책·전략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요약	5
[표 1-2] 2014년 창조경제 실현 추진 분야별 정책·전략 현황	10
[표 1-3] NITRD의 8대 연구 분야, 예산 및 주요 활동 내용	13
[표 1-4] EU의 최근 ICT 주요 정책(2013년 이후)	19
[표 1-5] EU 주요국의 최근 ICT 주요정책(2013년 이후)	22
[표 1-6]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실시방안 통지”의 단계별 목표	27
[표 2-1]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	39
[표 2-2]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현황	39
[표 2-3]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 절차	40
[표 2-4] 각 공공기관 임원진의 출신성향별 분포	41
[표 2-5]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자 수	42
[표 2-6] SKT의 약관	68
[표 2-7]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별 장애발생 및 배상현황(2009.1~2012.4)	69
[표 2-8] 해외 이동통신사 약관	70
[표 2-9] 미국 이용자 대표 피해사례	72
[표 2-10] Verizon의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배상 내용	72
[표 2-11]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손해배상 약관	74
[표 2-12] 김도읍의원 제출안에 대한 미래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	85
[표 2-13] 정부 제출안에 대한 미래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	91
[표 2-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법제 동향	97
[표 2-15] 사업자별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현황	103
[표 2-16]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변화	105
[표 2-17]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109
[표 3-1] 미래창조과학부 조직 및 주요 기능	118
[표 3-2]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관련 법률 현황	119
[표 3-3] 제19대 국회의 법률 제·개정 현황	120
[표 3-4] 원안 가결된 법률 처리 현황	121
[표 3-5] 수정 가결된 법률안 처리 내역	122
[표 3-6] 2014년 ICT 관련 개정법률 현황	125

[표 3-7]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	126
[표 3-8] 미래 성장동력 분야별 책임·협력 부처	132
[표 3-9]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1)	139
[표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2)	140
[표 3-11] 관련 법령 및 개선(안)	143
[표 3-12]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146
[표 3-1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147

[그림 목차]

[그림 1-1] ICT 분야의 주요 기술개발 및 정책 패러다임 진화 방향	4
[그림 1-2] ICT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9
[그림 1-3] NITRD의 조직 구성 현황	11
[그림 1-4]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전략과 추진과제	30
[그림 1-5]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ICT 규제개선 방향	31
[그림 2-1] 공인인증서 연도별 발급 건수 및 분야별 이용률	57
[그림 2-2] 이미지 패스워드 예	59
[그림 2-3] LTE 네트워크 구조	63
[그림 2-4] 사업자별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비중 현황	104

제 1 장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 1 절 국내 ICT R&D 및 정책 추진 동향 분석

1. 국내 주요 ICT R&D 추진 경과

□ ICT R&D 추진 연혁

- o 최근 ICT 기술, 유·무선 네트워크 및 단말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규 스마트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여 고속성장 중에 있음
 - 그에 따라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의 u-Learning, u-Health, 텔레매틱스, 홈 네트워크, u-City, u-Government 및 M-Banking 등의 서비스가 보편화 되고, 이를 한층 더 고도화시킨 서비스마저도 등장하고 있음
 - 그에 따라 ICT와 타 첨단산업 분야와의 융합뿐만 아니라 전통산업과의 융·결합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o 반면에, ICT 분야의 지속적인 인적·물적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ICT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며, 관련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ICT 기반의 산업 내지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
 - 현 정부에서도 ICT R&D 진흥과 아울러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신 경제성장 프로그램이 다각도로 추진되는 등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주요 ICT R&D 정책·전략의 추진 개요

- o 국내 ICT R&D 분야는 1960년대 말 이후 국가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을 ICT 등 첨단과학기술 위주로 수립·추진하면서 급속한 발전 과정을 보여 왔음
 - 특히, 정부의 집중 지원 및 육성 전략의 추진 등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놀랄만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탄생시키면서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점차 확보

- 대표적인 성과로는 1980년대 전전자교환기(TDX) 개발, 1990년대 DRAM 개발 및 CDMA 상용화, 2000년대 세계 최초의 DMB·WiBro 시스템의 개발·상용화 및 NoLA(New Nomadic/Loccal Area Wireless Access;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 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NeMA(New Mobile Access)를 비롯하여 ICT 기반의 융·복합 기술 개발, 5G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등 ICT 기반의 미래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요 ICT R&D 정책 · 전략의 추진 단계 구분¹⁾

- o ICT 발전 단계는 주요 기술·제품 개발 및 정부 정책·전략·세부 실행 프로그램 등을 기준으로 5단계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 구분은 아래의 [그림 1-1]과 <표 1-1>과 같음



[그림 1-1] ICT 분야의 주요 기술개발 및 정책 패러다임 진화 방향

1) 2004년 이전의 자료는 최완용, 컨버전스 시대 IT한국 어디로 가야하는가, 전자신문사, 2005.3(ETRI, IT산업 선도전략 연구, 19쪽에서 재인용)을 인용하였으며, 2007년 이후의 자료는 (구)지식경제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 등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 1단계는 1960년대부터 TDX 개발기에 이르는 기간을 ICT ‘기반구축기’로 구분하였으며, 동 기간동안에는 ICT 기기의 국산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 2단계부터는 기반구축기에 축적시킨 기반을 바탕으로 ICT 인프라구축(2단계), 급속한 성장기(3단계) 및 융합산업 태동기(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²⁾
- 가장 최근인 2013년부터는 ICT 기반의 “융합산업 성장기(제5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 정부가 ICT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표 1-1> 정부의 주요 ICT 정책·전략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요약

연도 (단계)	주요정책	주요정책추진 내역	관계법령 제/개정
’82 ~ ’90 (1단계)	국가기관간 전산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사업 수립(‘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86)
’93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기본계획 발표(‘93) 	
’94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추진계획발표 - 정보통신부 발족 	
’95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추진계획 확정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96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수립 	
’97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고도화 추진 계획 수립 - 정보화 사업 평가제도 도입 	
’98 (2단계)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2단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PC통신 및 인터넷 사용 활성화 대책 수립 - 컴퓨터 2000년 문제 종합 대책 확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제정
’99 (2단계)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코리아 21 수립 - 전자정부 종합 실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 전자서명법 제정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00 (2단계)	사이버코리아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전자정부 추진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지침 확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정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 활용등에 대한법률 제정 -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정

2) ETRI, 「IT산업 선도전략 연구」, 2008.07, 18쪽. 동 보고서에서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를 제1단계 IT산업 도약기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제2단계 IT산업 재도약기간 및 2002년부터 2004년까지를 제3단계 IT산업의 새로운 도약기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여기서는 2007년도 까지를 3단계로 하고,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를 4단계, 2013년도 이후를 5단계로 각각 구분해 보았음

‘01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고도화 계획 - 세부시행안 발표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
‘02 (3단계)				- e코리아 비전 2006 수립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어 발전법 제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03				- 디지털홈 비전 2007 발표 - 전자정부 로드맵 수립 - 브로드밴드 IT코리아 2007발표	- 위치정보이용법안 입법 예고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정
‘04~‘05	IT 839 전략	u-Korea u-IT 839 전략	브로드 밴드 IT 코리아 비전 2007	- BcN 구축계획 수립 - u센서 네트워크 기본 계획 수립 - IT 839전략 수립 - U-IT 839 전략 수립	- 공간정보산업법 개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정
‘06~‘07	IT 839 전략	u-IT 839 전략			
‘08 (4단계)	뉴 IT 전략				
‘09					
‘10					
‘11~‘12	IT Korea 미래 전략	IT 융합 화 산 전 략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 뉴 IT 전략 - Green IT 전략 - IT Korea 미래 전략 - IT융합 확산 전략 -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 융합산업 촉진법 - 융합산업 촉진법 시행령 - 기타 추가적인 법령의 제·개정 현황 자료 추가 검토 예정
‘13 (5단계)	Green IT 전 략	창조 경제 실현 계획	기 기 코 리 아	- Giga Korea - 창조경제 실현 계획 -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 - 정부 3.0추진 기본계획 -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 ICT산업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13.08) - ICT산업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 창의자본/벤조성 사업관리 규정 개정 - 발명진흥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4	S/W 혁신기본계획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모바일광개도플랜 2.0 비데이터공동활용종합계획	- 웅·복합·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도약방안 -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 - 웅·복합 축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 실천계획	- 자본시장법 개정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개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방안 - 농식품 ICT 웅·복합 확산 종합대책 -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 - SW혁신 기본계획 -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추진방안 - 국가과학기술 비데이터 공동활용 종합계획 -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 모바일 광개도 플랜 2.0	- 대외무역법 개정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제정(안) -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사물인터넷(IoT) 기본 계획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19개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 -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규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등 그동안 국회에 제류되어 있던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제·개정 법률(안)이 처리 되었음 - 2014년의 경우, 2013. 04. 29. 이후 국회에 제류되어 있던 법률(안) 93건 중, 제정 2건 및 개정 19건 총 21개의 법률 제·개정 안 통과(2014.05.02. : 나머지 71개 법률 제·개정 안은 대안 채택에 따른 폐기)

- o 한편,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ICT 분야의 눈부신 도약과 미래 기술개발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 및 ICT 기반의 웅·복합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그 성장이 지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 간 선순환 구조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06년 IPTV서비스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관련 규제의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내 ICT 분야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관련 논의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그 후 2008년부터는 New IT 및 그린 IT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등 ICT 기반의 웅복합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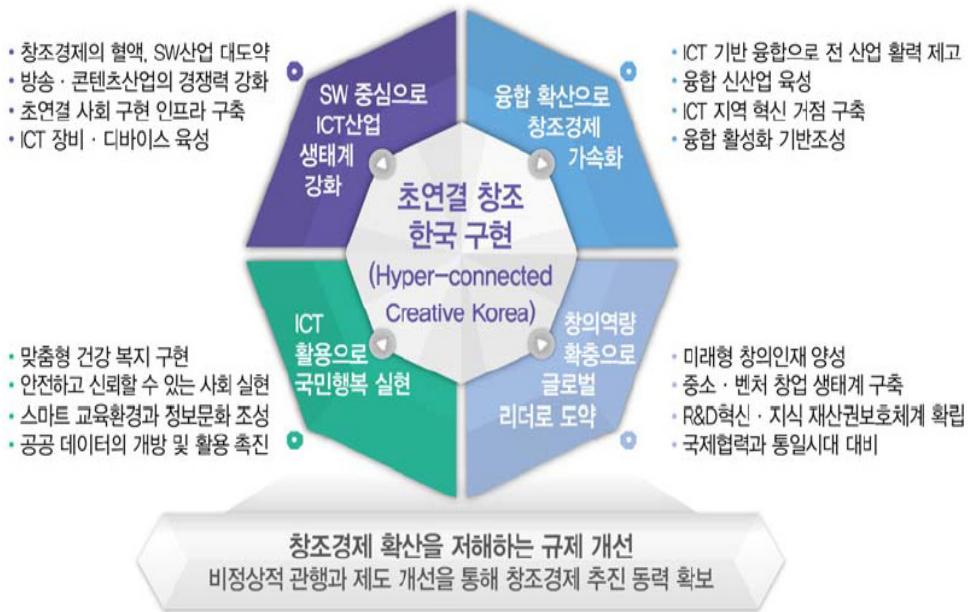
미비가 더욱 국가적인 현안 이슈로 대두

- 즉, 정부의 주요 ICT 정책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구분해 본 단계 중, 4단계부터 첨단기술 및 첨단산업의 발달속도에 비해 국가의 ICT 진흥정책의 수립·추진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의 신설·보완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 합리적 규제 및 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이나 서비스의 출시 시점에서 이를 규제·금지하는 법령들이 존재하여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적시에 출시되지 못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o 이에 ICT를 중심으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융합산업 기반의 산업 및 시장 구조, 범 정부차원의 규제 정책·전략, ICT 진흥을 위한 세부 실행 프로그램 추진 등 폭넓은 조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ICT 특별법 제정 이후, ICT 분야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 및 추가 법·제도 개선에 관한 현황 파악이 필요

2. 현 정부의 ICT 및 융합 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

가. 현 정부의 ICT R&D 정책 패러다임

- o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를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2014년도에는 ICT산업 발전 및 융합 활성화 기반 조성, SW·콘텐츠 산업 육성, 플랫폼 및 네트워크 강화, ICT 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도모, ICT R&D, 창의인재 육성, 중소·벤처 창업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림 1-2] ICT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2014 연차보고서, p.73

- o ICT 분야의 규제 및 법 · 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현 정부에 들어와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음
 - 2014년의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이 마련되어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등 법 · 제도 개선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를 위한 ICT R&D 분야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ICT R&D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도 20014년 6월 발표 · 추진하고 있음

나. 2014년 주요 ICT R&D 정책 추진 현황

- o 또한 정부에서는 ICT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ICT 융복합 산업 분야의 R&D 촉진, 산업 진흥 및 관련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추진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ICT 분야 이외에도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SW 분야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창조경제 실현 관련 주요 이슈별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 1-2>와 같이 추진되고 있음

<표 1-2> 2014년 창조경제 실현 추진 분야별 정책·전략 현황

구분	정책·전략	비고
ICT산업 발전 및 융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이동통신산업 발전 전략(1.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5.8) 차세대 모바일 CPU코어 개발 로드맵(5.14) 알뜰폰 활성화 방안(6.26) 및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6.30)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14~2018, 7.25) 	
SW·콘텐츠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산업 혁신을 위한 선도형 SW R&D 추진계획(2.27)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5.22) SW중심사회 실천전략(7.23) 	
플랫폼 및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진흥기본계획(1.3) IPV6 확산 로드맵(3.27) 글로벌 포준기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계획(5.27) 내가 만드는 ICT활성화 추진계획(6.19) PP산업 발전 전략(7.1) 	
ICT 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산업 육성계획(1.15) 3D 프린팅산업 발전전략(4.23) 사물인터넷 기본계획(5.8) 	빅데이터 분야는 '13.12.11.에 발표
ICT R&D, 창의인재 육성, 중소·벤처 창업 및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방안(1.23) ICT 특별법 시행(2.24) 2014년 정보통신·방송 기술진흥 시행계획(2.24) 범부처 국가 융합기술 발전저량(2.27)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4.23) 	
ICT 규제 및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안)(5.8) 창조경제를 위한 ICT R&D 규제개선 방안(안)(6.17) 단말기유통법 시행(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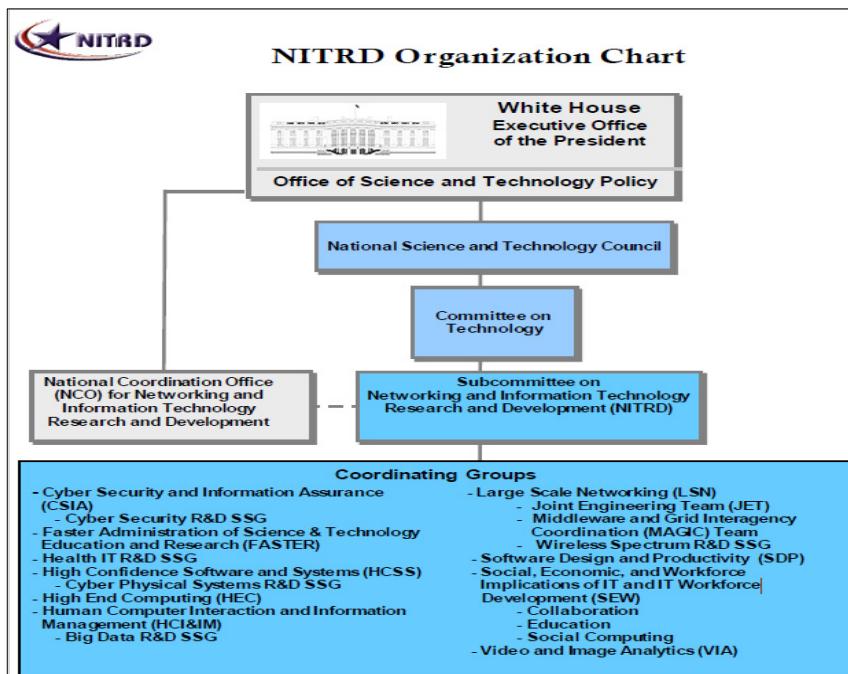
- o 국내 ICT 산업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ICT 기반의 융·복합산업을 중심축으로 하는 신경제성장 프로그램이 다각도로 추진되는 등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
 - 이는 ICT 기반의 융·복합 산업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령화·에너지·환경·안전 등 국가·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임

제 2 절 해외 주요국의 ICT 진흥프로그램 등 정책 동향 분석

1. 미국

□ 주요 과학기술 및 ICT 진흥 프로그램

- 미국은 1991년 「The High-Performance Computing(HPC) Act of 1991」에 근거하여 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ITRD) Program을 연방차원에서 운영해 왔음
 - 상기 「The High-Performance Computing(HPC) Act of 1991」은 1998년과 2007년에 「The Next Generation Internet Research Act of 1998」 및 「The America COMPETES Act of 2007」에 의해 수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의 NITRD 프로그램은 NSF, NIH 및 NASA 등 총 14개 연방기관에서 수행하는 R&D를 8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³⁾



[그림 1-3] NITRD의 조직 구성 현황

3) Source: https://www.nitrd.gov/subcommittee/NITRD_Org_Chart.pdf

- o NITRD 프로그램은 미국의 ICT R&D 관련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배정 예산이 3,909.4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R&D 수행 각 기관별 2015년 요청 예산의 총액은 약 3,807.2백만 달러 수준임
- o NITRD 프로그램은 HW 및 SW 분야를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8개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음
 - 8개 분야 중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응용 분야(970.3백만 달러)이며, 인간
 - 컴퓨터 상호작용과 정보관리(767.1백만 달러) 및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증(766.6백만 달러)의 순으로 높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NITRD 프로그램의 8개 분야 및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3> NITRD의 8대 연구 분야, 예산 및 주요 활동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연구분야	2014년 예산 (백만 달러)	주요 활동 내용
Cybersecurity & Information Assurance (CSIA)	1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High Confidence Software & Systems (HCSS)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서비스에 대한 활용성, 신뢰성, 안정성, 보안성 등을 보장하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연구 개발
High End Computing Infrastructure & Applications (HEC I&A)	2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HW, SW 및 시스템 아키텍처 혁신 창출
High End Computing Research & Development (HEC R&D)	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 컴퓨팅, 바이오 컴퓨팅 등 미래 컴퓨팅 기술 개발
Human Computer Interaction & Information Management (HCI&IM)	2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 형태와 기법 확장 및 정보자원 이용과 관리 능력 개선
Large Scale Networking (LSN)	12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선 통신 등 네트워크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인터넷 확장성에 관한 연구
Social, Economic, & Workforce Implications of IT (SEW)	1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사회 파급력 연구 ICT 교육을 위한 혁신 모델 개발
Software Design & Productivity (SDP)	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개발과 품질개선 연구
합계	3,909.4	

Source : Agency NITRD Budgets by Program Component Area(NITRD, <https://www.nitrd.gov>)

- o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NII)"라는 신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음
 - 2008년에는 NNI에 14.5억 달러를 투입하여 나노기술과 생명과학, 재료기술 및 정보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02년에는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전략(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을 마련하여 Nano, Bio,

Information 및 Cognitive의 4개(통상 "NBIC"로 약칭) 핵심축이 초기단계부터 수렴·융합되어 연구되고 응용될 수 있도록 NBIC Converging Technology 틀을 새롭게 도출하여 정부, 교육계,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 권고사업을 제시하였음

-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NIH, FDA, DOD, NASA, DOC 및 NSF의 6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Vision for 2020 : Regenerative medicine"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융합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정책·전략 및 법제도 시스템

- o 미국의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통합 프로그램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의 ICT 진흥프로그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The High-Performance Computing(HPC) Act of 1991」, 「The Next Generation Internet Research Act of 1998」 및 「The America COMPETES Act of 2007」 등의 법령에 근거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 o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ICT 분야의 융·복합 패러다임의 급변에 대응하여 ICT 관련 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정책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
 - 즉, 미국은 방송, 통신 및 유료방송서비스 등 미디어 전반에 적용되는 법령을 1996년에 단일 법령인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 of 1996)으로 통합함으로써 해결하였음
 -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대한 규제정책의 수립·시행 및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은 연방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다만, 경제적 규제 이외의 서비스 내용 등의 사회적 규제는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오바마 정부의 ICT 정책

- o 오바마 정부는 최근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ICT 분야에 대해서는 ICT 산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부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미국이 ICT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2월에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단계별 대응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사이버보안 수칙」을 발표한 바 있음
- o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최근에 마련하거나 제·개정한 ICT 관련 주요 정책 및 법제도 개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히, 앞의 NITRD의 8대 연구 분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응용 및 사이버보안 및 정보 보증 등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2년 5월 23일에는 “Digital Government : Building A 21st Century to Better Service” 정책을 발표하고, 동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보 중심적, 플랫폼 공유, 고객 중심적 및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4대 원칙을 발표·시행
 - 2013년 1월에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개정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종래에 NITRD에서 추진 중이던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신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공개하였음
 - 특히,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2014년 7월에는 미국 내 주요 기반시설과 연방 정부를 보다 강력한 보호를 위하여 「국가 사이버 보안 및 중요 인프라 보호법 (National Cybersecur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of 2014)」, 「중요 인프라 연구개발 촉진법(The Critical Infrastruc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Advancement Act)」 및 「The Homeland Security Cybersecurity Boots-on-the-Ground Act」가 제정되었음

2. EU

가. EU 차원의 추진 정책 현황

□ 2013년 이전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 o 유럽연합은 2004년 “지식사회건설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CTEKS : Converging Technolo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을 마련하여

미국의 NBIC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및 윤리적 규제 장치를 포함한 전략을 수립

- 또한 융합영역을 건강, 교육, 정보통신, 환경 및 에너지의 5개 분야로 설정하였고 융합기술의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o 뿐만 아니라 기술융합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Knowledge NBIC Project(‘06~’09)’를 추진하여 NBIC 영역에서 나타난 지식 및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수행, 지식생산물의 패턴 및 잠재적인 사회적용 사례를 검토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범 유럽차원에서 Framework Program7(FP7 '07~'13) 추진을 통해 보건, 바이오, IT기술, 나노 및 소재,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운송 및 항공기술, 사회경제학 및 인문학, 우주 및 보안기술 등 9개 분야에 대해 융합기술 개발의 확대 및 학제 간 연구개발 추진을 강화하고 있음
- o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IT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인간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 친화적 관점의 유비쿼터스 융합기술 개발 프로그램인 ”i2010 & IST”를 추진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의 추진과 더불어 유럽의 주요 기업들도 특정분야, 예컨대, 필립스(헬스케어), 지멘스(의료서비스 및 차세대 초음파 센서) 및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랩온어 칩) 등 주요기업들도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o EU 주요국의 ICT 및 ICT 융·복합분야에 대한 규제 및 법제도는 EU 위원회에서 합의한 각종 Framework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각국은 국내법의 제·개정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EU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이 권고안 내지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각 회원국들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EU의 주요 ICT 분야의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규제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 EU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각 국가별로 ICT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 단일법령으로 통일한 국가도

-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대응하는 국가도 있음
- 또한 ICT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단일 규제기관을 통해 규율하는 국가도 있지만, 분야별로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어 규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국가도 있음

□ 2013년 이후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 o 「유럽 디지털 어젠다」
 - 동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EU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2013년 1월 “「유럽 디지털 어젠다」2013~2014”를 발표하고, 2013년 및 2014년에 추진 할 핵심 추진 7대 우선 전략을 발표
 - 핵심 추진 7대 분야에는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EU 경제 회복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동년 2월에는 7대 우선 전략 중 외교 안보 정책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전략과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NIS)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발표 (2013.2.7.)
- o 「PETROBOT」 프로젝트
 - 「PETROBOT」 프로젝트는 2013년 9월에 발표한 프로젝트로 석유, 가스 및 화학 공장 등 고위험 설비에서 사람을 대신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로봇 개발 프로젝트임
- o 「Opening up Education Initiative」
 - 교육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로 일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혁신 및 디지털 기술 교육의 확대 촉진을 목표로 2013년 9월 발표
 - 동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증진에 중점을 둔 5대 추진 목표, 24개 실행계획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o 프레이스(PRACE) 프로젝트
 - EU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표되는 슈퍼 컴퓨터 500대 리스트(Top 500)에서 의하면, 2012년을 기점으로 EU보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
 - 이에 EU의 슈퍼 컴퓨팅 연구 기관인 PRACE가 ‘Supercomputers for All’ 을 기치로 한 「유럽 통합 슈퍼 컴퓨터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음.

- 그 결과 2013년에는 EU가 중국을 앞질러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다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는 등 EU와 중국 간 슈퍼컴퓨터 분야에서의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 중
 - o 「Cloud for Europe : C4E」 (2013.11)
 - 동 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사용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식별하고, 이러한 장애물 극복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업계로부터 연구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o 기타의 프로그램 및 ICT 인프라 구축 현황으로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 등이 있음
 - EU는 2013년 유럽 전역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100% 구축 완료 달성
 - 로봇 관련 추가 프로젝트인 「SPARC Initiative」(2014.6.3.) 추진
 - 기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실행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표 1-4> EU의 최근 ICT 주요 정책(2013년 이후)

발표시기	정책 · 전략	주요 내용
2013.1.10	2013-2014년 디지털 어젠다 7대 우선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이며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 환경 창출 · 유럽연결기금(CEF)을 통한 새로운 공공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술 및 일자리 대연합 추진 · EU 사이버 보안 전략 및 지침 제안 추진 · EU의 저작권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 공공부문 구매력 활용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가속화 · 새로운 전자 산업 전략 제시
2013.2.7	사이버 보안 전략과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NIS)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보안 전략 : 공개, 안전, 안전한 사이버 공간 ·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지침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
2013.9.3	고위험 설비 검사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 (PETROB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원회는 석유, 가스, 화학 공장 등의 고위험 설비에서 사람을 대신해 조사 및 점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개발 프로젝트 추진
2013.9.25	디지털 기술 교육 촉진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up Education 추진 목표 : 교사와 학생을 위한 혁신 기회 창출, 개방형 교육 자원(OER) 활용 촉진,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투명성 제고, ICT 인프라 구축, 해외 교육 기관과의 협력 강화
2013.10.1 4	스마트시티 구축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및 도시 이동성 확보 · 에너지, 운송, ICT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 구축 등
2013.10.1 7	통합 슈퍼 컴퓨팅 전략(Horizon 2020 전략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과 학계를 위해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조직화 · 유럽 산업계에 적용 가능한 액세스케일 기술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자율적인 개발 노력 촉진 · 경쟁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영역 내에서 복수의 고성능 컴퓨팅 탁월성 센터 구축
2013.10.	유럽 전역, 브로드 밴드망 100%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원회, 2013년 말까지 유럽 전역에 100% 브로드밴드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조기 완료 · 2020년까지 30Mbps 이상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망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2013.10.)
2013.11.6	Cloud for Europe (C4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사용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식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의 정의 ·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위해 업계로부터 연구 조달
2014.3.	5G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표준화 추진을 앞두고 이동통신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치열한 R&D 경쟁 전개 · 5G 연구재단을 설립, 기술개발을 위한 R&D 집중, 다수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형성 등 5G 개발에 전력 집중 · 향후 7년간 2조 4,000억 원 투자
2014.6.3	SPARC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180개 기업과 연구 기관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로봇 연구 개발 프로그램(2014~2020) · 활용분야 : Manufacturing, Healthcare, Home car, Agriculture, Security, Transport

자료 : IIITP, NIA 및 KISTI 등 관련자료 재구성

나. EU 개별 국가별 최근 정책 추진 동향

□ 영국

- o 영국은 이미 2003년 7월 17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을 제정한 바 있음
 - 동 법령은 형식적으로는 1990년 및 1996년 법률의 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파수, 통신사업, 방송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동 법령에 의해 ICT 분야에 대한 규제도 기존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한 법령임
- o 영국은 2013년 6월, 기업혁신기술부 주도하에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보 경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하고자 「정보 경제 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을 발표
 - 「정보 경제 전략」은 디지털 기술 기반 강화, 중소기업 기술 활용 촉진, 공공 부문의 데이터 추가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o 2014년 1월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 고려해야 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원칙(Cloud Services Security Principles)」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14가지 원칙을 제시
- o 기타
 - 이밖에도 영국은 정부 ICT 사양에 적용될 SW 상호 운용성, 데이터 및 문서 형식에 대한 「공개 표준 원칙」(2013.4.)을 공표
 - 모든 공공 데이터에 누구나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NII)」 실행방안 발표(2013.11)
 - 내각사무처는 「G클라우드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 부문의 IT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클라우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2013.05)
 - 디지털 격차 및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통합 전략」을 발표(2014.04)

□ 프랑스

- o 「New Industrial France」 프로젝트(2013.09)
 - 동 프로젝트는 프랑스 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향후 10년간 육성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o 주요 미래 전략은 34개이며, 그 중에서 임베디드 SW 및 시스템, 디지털 병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e교육, 이동통신, 증강현실, 슈퍼컴퓨터, 사이버 보안 등 ICT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독일

- o 「Industry 4.0」 (2013.4.)
 - 독일의 「Industry 4.0」은 ICT융합 기반의 ‘제조업의 완전 자동 생산 체계 구축 및 생산 과정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최적화된 상품 제조 플랫폼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조성해 전체 생산 공정의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음
- o 최근에는 독일 연방 정부에서 모든 이해관계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용이한 접근 및 저비용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인터넷의 관리와 규제에 관한 10대 주요 원칙을 제안 한 바 있음(2014.3.19.)

□ 기타

- o 아일랜드는 중소기업 온라인 이용 촉진, 미래지향적 고용 창출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참여(Digital Engagement)를 위한 「국가디지털전략」(2013.7.)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수행 절차에 진입하였음
- o 네덜란드는 급증하는 외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력을 강화를 위한 「제2차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NCSS2)」을 수립하였음(2013.11.)

- 동 전략에서는 정부·민간·시민·국제 사회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실행 전략으로 삼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및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1-5> EU 주요국의 최근 ICT 주요 정책(2013년 이후)

시기	정책·전략	주요 내용
영국	정보 경제 전략 (Information economy strategy, 2013.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기술기반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활용 촉진 • 공공 데이터 개방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원칙(14가지 원칙, 20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보호, 자산 보호 및 복구, 소비자 간 분리, 운영 보안, 인적 보안, 안전한 개발, 공급망 보안, 안전한 소비자 관리, 안전한 가입 및 탈퇴, 서비스 인터페이스 보호, 안전한 서비스 관리, 감사 정보제공,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프랑스	New Industrial France 프로젝트(2013.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건강, 디지털, 운송 등 4개 분야에서 총 34개 산업을 선정하여 민관 협력으로 10년간 육성할 계획 • 미래전략 34개 산업 중 ICT산업 관련 부문에는 임베디드 SW 및 시스템, 스마트 섬유 및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병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e교육, 이동통신, 증강현실, 슈퍼컴퓨터, 로봇, 사이버 보안 등이 있음
독일	Industry 4.0 (ICT기반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 20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 자동 생산 체계 구축 및 생산 과정 최적화 • IoT를 통한 사이버 기반의 시스템인 스마트 공장 실현 • 제조업의 핵심시장화 전략
	인터넷 거버넌스 10대 원칙(2014.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동일 보호 • 무차별적이고 투명하며 공개적인 인터넷에의 접근 • 인터넷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의무 등 부과 • 보안, 안정성, 회복력(resilience) 및 온라인상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 구현 토대 마련 등
아일랜드	국가디지털 전략(2013.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거래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통한 중소기업 온라인 거래 활성화 • 고령층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교육 지원 Benefit4 계획(2016년까지 26만 8천명)
네덜란드	제2차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CSS2, 20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디지털화 촉진, 외부 위협에 효율적 대응 및 온라인 상의 기본 권리와 가치 보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하고 열린 디지털 영역 구축(사이버 보안(Security), 온라인상의 자유(Freedom) 및 사회 경제적 이익(SocialEconomic Benefits)의 달성 통해 실현)

자료 : IIITP 및 NIA 자료 재구성

3. 일본

□ ICT R&D 및 산업 정책 추진 방향

- o 일본은 정부 차원의 새로운 ICT 분야의 융·복합 R&D 비전 내지 추진 계획의 수립·시행 보다는 기존의 산업분야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중심의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중시하고 있음
 - 이에 NT, BT, IT 및 ET의 4대 전략분야와 특정 융합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거나,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융합 형태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
 - “신산업창조전략(‘04)”에서는 NT, BT, IT 등 신기술간 융합 혁신을 통해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헬스케어, 환경에너지, 비즈니스지원 서비스의 7개 분야의 신성장 산업을 집중 지원
 - ‘Focus 21(‘04)’에서는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기술 기반의 NT, BT, IT 및 ET 등 신기술간 융합기술 상용화 전략을 마련하여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위주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
- o 한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ICT 분야에 대한 법령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개별 법령에 의해 특정 산업분야 또는 서비스를 규율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이 각각 마련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ICT 관련 규제 및 법령의 시스템적 구조는 우리나라와 유사
 - 다만, 개별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령이 우리나라보다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기본 법령에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조항을 둠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 제공 관련 기본 환경이 유연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구조임
 - 뿐만 아니라 ICT R&D 및 산업 분야에 대한 각종 진흥·규제 정책 및 법령 제·개정 정책 모두를 오랜 동안 총무성 단일의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최근의 주요 추진 정책

- o 「2013 사이버 보안 전략」(2013.6.27)
 -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IT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으로

과거에 비해 고도화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

- 국가 안전 보장 및 위기관리, 사회·경제적 발전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이버 공간 구축, 사이버 공격 등에 강력하고 혁신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회 구현 등을 주요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ICT 성장전략」(2013.6)

- 동 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견인해 나갈 핵심 전략수단으로서 경제 규모 확대, 고용창출 등을 포함하여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정보 시큐리티 강화, 퍼스널 데이터 활용, 통신·방송 인프라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전략임
-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ICT 스마트타운의 공동 플랫폼 구축, 참신한 아이디어·컨셉을 미리 검증해 주는 상시 공모제도 신설,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개발 거점 (CYREC) 구축,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오픈 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세계 최첨단 ICT국가 창조’ 비전하에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 창출, 사회적 과제 해결 및 ICT 공통기반 혁신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o 스마트미터 및 연료전지 계획(2014.1.17.)

- 2020년대 초까지 모든 상용, 산업 및 주거 수용가에 스마트미터 구축 완료
- 2030년까지 530만 가구에 연료전지 활용을 목표로 비용 절감기술 확보와 표준화를 위해 첨단 R&D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

o 스마트 일본 ICT 전략(2014.05)

- 동 전략은 3대 비전으로 2020년까지 지식정보국가 실현, ICT 삼위일체 및 경영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음
- 또한 동 전략에서는 ICT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2020년까지의 ICT 환경 정비를 의 실행을 위한 2대 액션플랜으로 하고 있음

4. 중국

□ 중국의 ICT 시장 동향

- o 중국의 ICT시장은 최근들어 모바일 네트워크 및 스마트 단말 확산에 따라

급속한 시장성장과 더불어 시장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특히, 이동통신 기술, 특히 4세대 기술은 우리나라 및 미국 등과 달리 시분할접속방식(TDD) 기술을 기반으로 4G 네트워크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음
 - 또한 콘텐츠, 단말 및 플랫폼 시장도 빠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o 과거 중국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ICT 기술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대 시장으로만 인식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기술추격이 거세지고 중저가 중심의 ICT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그로 인해 이동통신 및 관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시장 동향, C-P-N-D 생태계 내에서의 주요 사업자 동향 및 중국 정부 차원의 ICT R&D 및 정책을 비롯한 법·제도에까지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이어 TV시장까지도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ICT 경쟁력이 국내 ICT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ICT R&D 및 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⁴⁾

- o 중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방식을 제조업 중심에서 ICT로 확대하고, ICT를 경제·사회 전반의 범용기술로 인식하여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추진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정보화를 모든 분야의 현대화 수단으로 간주하였고, 그에 따라 ICT 자체가 정보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에 활용되는 측면까지도 고려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특히, 중장기 ICT 육성 및 단계적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 기반의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o 장기적인 ICT 육성 전략으로는 「국가정보화 발전전략(2006~2020)」이 있음
-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은 ① 국가 경제에 정보화 촉진, ② 전자업부 활성화, ③ 선진 인터넷 문화 구축, ④ 교육·의료·공공안전 분야에서의 정보화

4) 흥법석·전춘미, 중국 정부의 ICT 진흥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Digeo Issue & Trend, 2014.11.10., pp.5 이하 참조.

촉진, ⑤ ICT 인프라 확충, ⑥ 효율적인 정보자원 개발, ⑦ 중국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 ⑧ 국가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⑨ ICT 기술 활용을 통한 국민 효율성 증대의 9개 핵심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 o 중기적인 ICT 육성 전략으로는 ‘12차 5개년 계획(2011.5.)’에서 ICT 분야를 차세대 7대 신성장 분야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ICT를 신성장 동력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 계획에서 7대 신성장 분야는 ICT 외에도 ICT 기반의 첨단장비,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분야 등과의 융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동 계획에서의 차세대 IT 분야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전자핵심 기초산업 및 첨단 SW 및 신흥 정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 o 중장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단기 및 분야별 특화 정책도 수립·시행했으며, 현재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소프트웨어 및 IC 산업 육성 정책’은 2000년 국무원이 발표·시행한 정책으로, 2011년에는 기존 정책을 개편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책을 더욱 확대·진화시키고 있음
 - 2006년에는 정부 주도의 16개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ICT 분야는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등을 포함하는 “핵심 전자부품”과 “이동통신” 분야가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음
 - 한편, 2012년에는 ICT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인 “브로드 밴드 차이나”를 수립하고, 2013년 8월에는 국무원에서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및 실시방안 통지’를 마련하여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표 1-6>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실시방안 통지”의 단계별 목표

구분	추진 기간	주요 추진 내용
1단계 속도향상 단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 광대역 이용자 2억 1천만명(보급률 : 도시 55%, 농촌 20%) 3G 및 LTE 이용자 3억 3천만명(보급률 25%)
2단계 인터넷 대중화 단계	2014년~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D-LTE 상용화 추진 유선광대역 사용자 2억 7천만명(보급률 : 도시 65%, 농촌 30%) 3G 및 LTE 이용자 4억 5천만명(보급률 32.5%)
3단계 글로벌 도약단계	2015년~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광대역 사용자 4억명(가구 보급률 70%) 3G 및 LTE 이용자 12억명(보급률 85%)

자료 : KOTRA globalwindow(2013.08)

□ 중국의 ICT 관련 정부부처 및 법·제도 현황

- o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업신식화부(MIIT) 및 과학기술부(MOST)에서 ICT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주관하고 있음
 - 특히, 2014년에는 시진핑 주석, 21개 부처 및 위원회 장관으로 구성된 “중앙 사이버 보안 및 정보화 선도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 o 한편, ICT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개정 법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통신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조례(Th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2000년)
 - 전자상거래시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립한 전자서명법(2004년)
 -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해 주파수 제공 등의 사항을 담고 있는 법령으로는 전파관리조례가 있으며, 이는 1993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2014년에 개정되었음
- o 따라서 최근 중국정부의 ICT 산업 진흥 정책 및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는 등 국내 기업으로서는 시장규제에 대한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 특히, 중국의 ICT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은 향후에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의 ICT 분야에서의 R&D, 시장 및 법·제도 등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적·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제 3 절 ICT 환경변화와 법·제도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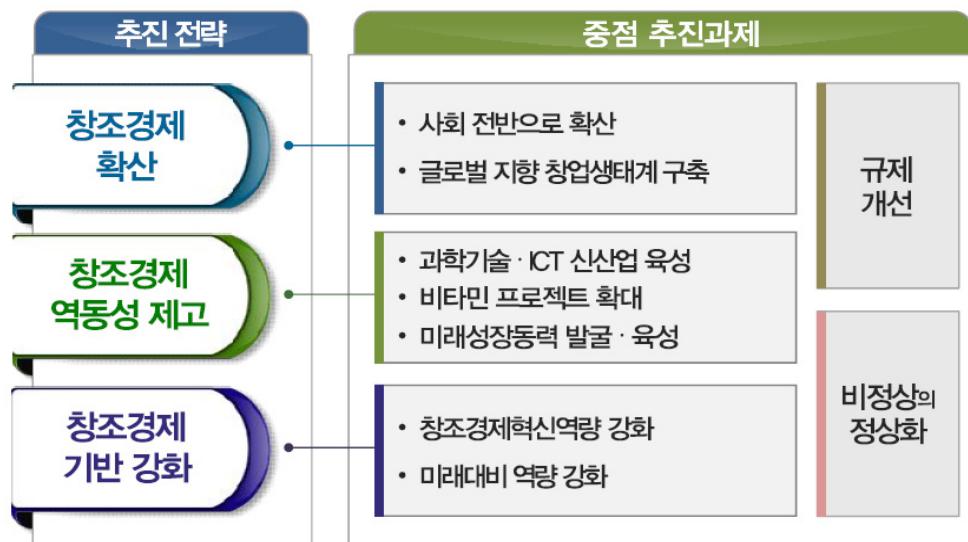
1. ICT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역할과 중요성

□ ICT R&D 및 산업 패러다임의 방향성

- o ICT R&D 및 산업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 내지 서비스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분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의 ICT R&D는 기존 ICT 분야의 진화 및 발전 속도 기술의 개발 내지 진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자동차, 조선 및 농업 등 전통산업과의 융·복합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o 최근의 R&D 및 산업발전 패러다임 모두가 융·복합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ICT 분야가 담당하고 있음
 - 이에 현 정부의 정책비전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성장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ICT 기반의 정책·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첨단기술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ICT 기반의 융복합 R&D 및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o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높은 ICT 기술경쟁력 및 제품·서비스가 국내외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ICT 분야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 모두가 ICT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현재 봉착해 있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하는 데에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및 각국의 정부들은 ICT 기반의 R&D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및 산업분야와의 융합시장 개척을 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 기업들은 ICT R&D 및 제품·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 추진과 아울러 공동 R&D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ICT R&D 및 시장 분야에 대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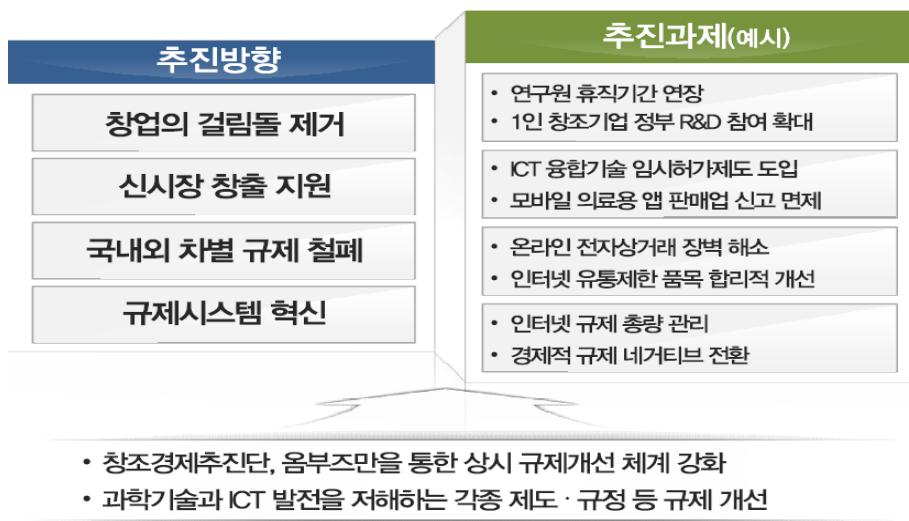
-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 융합 기술 및 시장에서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창조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및 ‘내수 활성’ 을 2014년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7월에 발표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계획’ 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 및 ‘한국형 뎅어리 규제 개혁’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ICT R&D 및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이 미진한 상황



[그림 1-4]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전략과 추진과제

- 현 국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ICT R&D 인프라 및 시장에 대한 법·제도의 미정비 및 중복 규제는 국가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즉, ICT 분야의 R&D 수준 및 시장환경에 비해 정부의 ICT 분야에 대한 R&D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령의 신설·보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신제품 내지 신서비스 출시·제공을 가로막는 과거의 산업규제 패러다임에 기반한 법·제도들도 존재하고 있어 국내·외 관련 시장에서

- 선진국들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국가 경제적 손실과 국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아래의 [그림1-5]와 같이 2014년 추진 업무의 주요 부분 중에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선”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음



[그림 1-5]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ICT 규제개선 방향

- o 한편, 미국, 일본, EU 등 ICT 분야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ICT 기반의 융·복합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 일본, 및 EU 등의 선진국들에서는 ICT R&D 뿐만 아니라 ICT 기반의 타 산업 분야와의 융복합 R&D 촉진과 함께 관련 규제 및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출현 및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 내지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ICT R&D 및 산업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 o 결국, 최근의 ICT R&D 및 산업 패러다임인 ICT 기반의 융·복합 기술 및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들의 제·개정 등 ICT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시급히 마련·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o 이에 우선적으로 현 정부에 들어서서 핵심 추진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ICT R&D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 중에서 “ICT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음
- o 또한 2013년 및 2014년에 걸쳐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주무부처에서 추진되어온 주요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시행하고, 최근 이슈로 대두되어 추진되고 있는 ICT 신산업 분야 중 사물인터넷(IoT, M2M), 클라우드(Cloud) 및 빅데이터(Big Data) 분야에 대한 법·제도 제·개정 노력 을 심층 조사·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2. ICT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성

□ ICT R&D 및 융·복합 시장경쟁의 격화

- o 국내에서 ICT R&D 및 산업 분야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혁신· 성장기를 거쳐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루함으로써 ICT 분야에서 국내 경쟁력을 최고 수준의 대열에 올려놓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최근 국내 ICT R&D 및 산업은 ICT 기반의 산업 간 융·복합 서비스가 사회·경제 일반에 확산되어 보편화되면서 보다 복잡·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음
- o 국내·외 ICT R&D 및 제품·서비스 시장은 융·복합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방향성 또한 예측하기 힘든 구조를 띠기 시작하고 있음
 - 즉, 글로벌 시장에서의 ICT 분야의 경쟁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 내지 재편되고 있어 국가 및 기업들 간의 협력과 개방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o 따라서 시장측면에서는 기존의 ICT 경쟁력 외에도 보다 탄력적이고 수요지향적인 R&D 및 시장창출 노력이 필요
 - 뿐만 아니라 규제정책 및 법·제도 측면에서도 시장경쟁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반영한 제·개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국내 ICT R&D 환경 제고 및 기존 ICT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관련 융·복합 시장의 창출 촉진에 필요한 규제개혁 및 법·제도 개선은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아직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o 한편, 현재 및 미래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ICT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정부정책과 향후 정책의 추진 방향, 규제정책 및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임

□ 미래 ICT 융·복합 시장환경을 고려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의 설정

- o ICT 시장환경은 ICT 기반의 융·복합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임
 - 따라서 미래 ICT 및 ICT 기반의 융·복합 시장의 발전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의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 o 한편, ICT 분야에서의 시장 환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경쟁·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우선,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스마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 것임
 - 또한 ICT 기반의 융·복합 분야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융합 신산업 분야의 성장 과정에서의 다양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둘러싼 시장 및 법·제도적 갈등 또한 증가할 것임
- o ‘스마트’ 를 둘러싼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될 것임
 - 네트워크, 단말, 제품·서비스의 스마트화에 따른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최근에 발효된 단통법 및 가계통신비 절감 이슈와 함께 중저가폰, 스마트 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중국의 ICT 시장의 성장에 따른 국내에의 영향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o ‘융합 신산업’ 분야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기존에 존재

하지 않던 제품·서비스의 등장이 예상됨

- 융합 신산업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또는 M2M), 스마트 홈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O2O(Online to Offline) 및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의 등장 등이 예상됨

□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향

- o 오늘날과 같이 고도화된 과학기술 및 ICT 산업 기반의 시장경제에 관하여 완벽한 규제 및 법·제도의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최소한의 규제 및 법·제도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
 - 즉, 2000년대 이전은 비교적 기술 및 시장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는 하나 규제 및 법·제도의 개선 노력의 진행으로 일정부분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의 기술 및 시장 내지 산업 발전 속도는 규제 및 법·제도적 측면은 차치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따라잡기 힘든 상황임
- o 따라서 현 시대적 상황에 맞는 ICT R&D 진흥 및 법·제도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환경을 고려한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즉, 종래와 같이 규제 및 법·제도가 기술 및 시장 발전에 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탄력적인 형태로 선행함으로써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서비스의 출시 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o 미국 및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은 법체계 구조상 사회·경제적 변화에 매우 탄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과학기술 내지 ICT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각종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처하고 있음
 - 반면에 독일 및 일본과 같이 대륙법계에 속해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성문법을 근간으로 모든 법·제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명확하고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탄력적이지 못하고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ICT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상한 규정뿐만 아니라 이를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되어져 왔음
- o 이에 우리나라도 2013년 “ICT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제도 운영 체계는 아직도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ICT 분야에 대한 규제정책의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적용 노력 등이 필요한 시점임
- 즉, 정부차원에서 ICT 분야의 기술 및 시장의 진화에 맞는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o 특히, ICT 및 ICT 기반의 융·복합 산업의 진흥, 기업 간 협력·혁신 네트워크 구축 강화,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과의 공진화 도모 등 상생 활성화에 목표를 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 2 장 ICT 신기술 시장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 1 절 민영화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 검토

1. ‘낙하산 인사’ 관행의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 현황

- ‘13년 현재 전체 공공기관 295개 중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은 87개임

<표 2-1>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

구분	‘12년	‘13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28	30	+2			+2
■ 시장형	14	14				
■ 준시장형	14	16	+2			+2
② 준정부기관	83	87	+4	+1		+3
■ 기금관리형	17	17				
■ 위탁집행형	66	70	+4	+1		+3
③ 기타공공기관	177	178	+1	+9	△3	△5
계	288	295	+7	+10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11개 기관에 모두 1,171명임

<표 2-2>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 현황

(‘12.12.31 현재, 명)

직위	공기업	준정부기관	합계
기관장	28	83	111
감사	25	83	108
상임이사	92	166	258
비상임이사	178	516	694
합 계	323	848	1,171

* 자료: 기획재정부

- o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은 공개모집(또는 추천)⁵⁾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

<표 2-3>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 절차

대상	임명 절차
기관장	공기업: 임원추천위 → 운영위원회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공운법 제25조제1항) 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 → 주무장관(공운법 제26조제1항)

- o 최근 5년(2008~2012.5)간 각 중앙행정기관(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퇴직공무원 수는 총 387명⁶⁾
 - 이들의 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 평균연봉은 1억 7백만 원
 -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72명
- o 공공기관 임원의 출신을 보면, 정계, 관계, 재계, 학계 등 그 구성이 다양

-
-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① 임원 추천위원회는 기관의 성격·결원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질적인 공모를 통해 능력있는 전문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공모제활성화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장 모집·심사에 관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할 수 있다.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010, 2012.12.7

<표 2-4> 각 공공기관 임원진의 출신성향별 분포⁷⁾

(단위: %)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전임원진평균		
	상임	비 상임	상임	비 상임	상임	비 상임	상임	비 상임	상임	비 상임	상임	비 상임	전체
정부	23.3	4.8	25.9	22.9	24.3	5.4	24.7	6.7	16.8	5.8	23.0	9.1	11.8
국회	20.0	23.8	14.8	14.6	31.4	17.2	31.1	27.5	20.1	23.5	23.5	21.3	23.4
재계	13.3	9.5	7.4	14.6	8.6	6.5	5.8	8.5	9.1	13.7	8.8	10.6	10.6
학계	0.0	31.0	0.0	29.2	4.3	29.0	6.8	32.3	12.9	27.3	4.8	29.8	21.8
언론	0.0	9.5	0.0	5.2	1.4	2.2	0.5	2.4	3.8	2.1	1.1	4.3	2.4
기타	0.0	0.0	0.0	1.0	0.0	1.1	2.6	0.3	4.6	0.6	1.4	0.6	1.4
사회	0.0	9.5	0.9	5.2	1.4	18.3	0.5	12.5	3.3	12.0	1.2	11.5	8.6
공공	43.0	9.5	49.1	3.1	28.6	7.5	24.2	6.9	28.4	11.1	34.7	7.6	16.7
대선	30.0	23.8	35.2	44.8	31.4	28.0	35.3	21.9	30.5	20.8	32.5	27.9	26.3

주)상임직 : 회(부)장, 기관장(원장,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전무이사, 상근이사, 감사직 등
 주)비상임직 : 사외이사, 비상임(근)이사 등

주)언론=언론문화계, 기타=기타전문가, 사회=사회단체, 공공=공공기관, 대선=대선관계인사

7) 위평량(2011),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분석: 임원의 과거 경력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1-2호. 2011. 3. 21)

<표 2-5>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5	소계
농림수산식품부	1	6	8	64	4	83
지식경제부	19	8	10	18	6	61
교육과학기술부	10	10	5	15	8	48
국토해양부	7	7	7	18	5	44
보건복지부	5	9	16	3	2	35
문화체육관광부	7	9	2	5	5	28
기획재정부	4	4	5	7	3	23
환경부	2	5	3	4	7	21
고용노동부	7	2	2	5	3	19
외교통상부	4	1	3	3	2	13
행정안전부	1	1	0	4	1	7
법무부	1	0	1	0	0	2
통일부	0	0	0	1	1	2
여성가족부	0	0	1	0	0	1
합계	68	62	63	147	47	387

□ 낙하산 인사 관행의 문제점

- 전문경영능력 부재로 인한 해당 기업의 성장 지체 내지 퇴보
- 사익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방만 경영 가능성의 증대 및 불필요한 사업 추진이나 재원 낭비 요인 증대
-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기업 운영이나 창조적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 운영 행태의 지속
- 정부 주무부처 및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기업운영과 부정부패 가능성의 증대

- o 내부 구성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분란발생 가능성 증대 및 내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조직 내지 기업 시스템의 붕괴 초래
- o 전문성·도덕성이 부족한 인사가 소위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에 임명되는 경우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공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o ‘낙하산 인사’ 관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산하 공공기관들을 엄격히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자체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동시에,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나 능력 있는 외부인의 영입 및 자체승진 기회를 박탈

2.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 방지를 위한 노력

현행법상 퇴직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⁸⁾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음

- o 그러나 정실임용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공정성 혼선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⁹⁾

8)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위평량(2011),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분석: 임원의 과거 경력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1-2호, 2011. 3. 21)

□ 공공기관에 대한 소위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은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o 2014년 1월 전순옥 의원 등 12인의 의안 발의 주요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에 맞는 임원 추천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o 2013년 7월 장병완 의원 등 10인의 의안 발의 주요 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녹취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o 2013년 6월 이인영 의원 등 10인의 의안 발의 주요 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o 2013년 5월 전순옥 의원 등 12인의 의안 발의 주요 내용
 -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형 공기업의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o 2013년 2월 전순옥 의원 등 11인의 의안 발의 주요 내용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함에 있어서 추천 대상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자 함
- o 2012년 12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0인의 의안 발의 내용
 -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o 2012년 11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인의 의안 발의 주요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 o 2012년 9월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10인의 의안 발의 주요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3분의 1이상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순위를 두어 추천하도록 함
- o 2012년 7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의안 발의 주요 내용
 -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지방공사에 출자한 지방자치단체(퇴직 전 5년 동안 재직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해당 지방공사에 출자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로 종사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하 “퇴직 지방공무원 등”이라 함)을 신설하려는 것임

3.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 방지 입법 가능성

□ 민영화된 공기업에의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음

- o 현재 퇴직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¹⁰⁾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10)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6. 생 략
-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 1.~ 8. 생 략
- ③ ~ ⑦ 생 략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o 민영화된 공기업은 사기업체에 해당

- 대한항공: 1969년 대한항공공사를 한진그룹이 인수함으로써 민영화
- 포스코: 2000년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민영화
- KT&G: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사명 변경과 동시에 민영화
- KT: 2002년 한국통신공사에서 민영화

o 정부부처를 퇴직한 공무원이 민영화된 공기업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이는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음

- 그러나 만약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게 되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낙하산 인사에 의한 폐해 제거 방안

o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인 경우

- 공무원이었던 자가 KT, 포스코 및 KT&G 등 공기업이었던 민간 기업에의 낙하산 방지는 공직윤리법 제17조 개정에 의해 해결 가능
- 즉, 공무원이 사기업체에 대한 낙하산 방지조항인 공직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의 낙하산 방지가 가능
- 그러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이를 조항을 이용하여 공직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제한을 회피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조항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거나 제한 대상자, 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예외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예외 조항들인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 동조 제6항 단서 및 동법 제18조의 개정 또는 삭제를 검토하여 해결

※ 퇴직일로부터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원천적으로 연장(2년에서 3년 또는 5년 등)하거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기간을 연장 (예컨대 10년)하는 등의 방법 강구

※ 다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사기업에 비해 정년 연한이 짧지도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검토 필요 있음)

o 공무원이었던 자가 아닌 경우

- 공직에서 퇴직한 지 오래 되었거나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가 KT, 포스코 및 KT&G 등 민간기업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대체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

o 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연결고리 제거

- 공기업이었던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내지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공기업이었던 시절에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민영화가 진행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o 공기업의 민영화 조건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 가능한 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
- 공기업의 민영화 절차 및 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제도의 마련

※ 예컨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독립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영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영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인이 있는 기업으로의 전환만을 허용

o 공기업의 민영화 조건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예상 효과

- 법·제도적 개선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아울러 민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형태로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또는 규제 장치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최근에 발생한 코레일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1〉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

□ ('12년말) 288개 → ('13년) 295개

구분	'12년	'13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28	30	+2			+2
▪ 시장형	14	14				
▪ 준시장형	14	16	+2			+2
② 준정부기관	83	87	+4	+1		+3
▪ 기금관리형	17	17				
▪ 위탁집행형	66	70	+4	+1		+3
③ 기타공공기관	177	178	+1	+9	△3	△5
계	288	295	+7	+10	△3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0)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문화부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림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식약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해제 (△3)	국방부	호국장학재단	정부지원비율 감소
	산자부	한국생산성본부	정부지원비율 감소
	금융위	한국기업데이터(주)	지분 매각
변경 (5)	국토부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타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농림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기타공공기관) + 농촌정보문화센터(농촌경제연 부설)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동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참고자료 2〉 2013년 공공기관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p>(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p> <p>(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p>
준시장형 공기업 (16)	<p>(재정부) 한국조폐공사</p> <p>(문화부) 한국관광공사</p> <p>(농식품부) 한국마사회</p> <p>(산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p> <p>(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p> <p>(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p>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p>(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p> <p>(안행부) 공무원연금공단</p> <p>(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p> <p>(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p> <p>(복지부) 국민연금공단</p> <p>(고용부) 근로복지공단</p> <p>(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p> <p>(방통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p> <p>(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p>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p>(미래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p> <p>(안행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p> <p>(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p> <p>(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p>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p>(산자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p>
기타 공공기관 (178)	<p>(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p>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178)	<p>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p> <p>(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p> <p>(미래부)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기초과학연구원</p> <p>(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p> <p>(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p> <p>(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p> <p>(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p> <p>(안행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 <p>(문화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p> <p>(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어촌어항협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p> <p>(산자부)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p>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178)	<p>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p> <p>(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p> <p>(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p> <p>(고용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p> <p>(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p> <p>(국토부)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p> <p>(금융위) 코스콤, 한국정책금융공사</p> <p>(국과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p> <p>(안전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p> <p>(보훈처) 88관광개발(주)</p> <p>(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p> <p>(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p> <p>(산림청) 녹색사업단</p> <p>(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p> <p>(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p> <p>(식약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p>

<참고자료 3> 유형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내용(임원 임명)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 관
	시장형	준시장형		
임명	기관장	<p>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복수추천)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p> <p>※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인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p>	<p>임원추천위원회(복수추천) → 주무장관 임명</p> <p>※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이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집행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 직원 500명 이상 - 기금관리 : 자산 1조원 이상 + 직원 500명 이상 	X
	상임이사	기관장 임명	기관장 임명	X
	비상임 이사	<p>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p>	<p>임원추천위원회 (소규모기관은 제외) → 주무장관 임명</p>	X
감사		<p>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p> <p>※ 총수입 1천억원 미만 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인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p>	<p>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p> <p>※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재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집행 : 총수입 1천억원 이상 + 직원 500명 이상 - 기금관리 : 자산 1조원 이상 + 직원 500명 이상 	X

<참고자료 4> 공직자윤리법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 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경우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절 공인인증서 관련 개선 방안 검토

1. 공인인증서 활용 현황

□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

- o 우리나라는 모든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대부분 사용해야 하는 상황(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 예외적으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등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 가능(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1조)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의 공인인증서 통계

- o 공인인증서는 ‘13년 3천만건의 발급이 있었으며, 인터넷뱅킹과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시 가장 많이 사용’



[그림 2-1] 공인인증서 연도별 발급 건수 및 분야별 이용률

자료 : 전자신문

□ 국내의 공인인증서 도입 배경

- o 과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확산에 대응하여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체계(일명, 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 구축을 강조

- 일상적인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와 유사하게 인터넷상에서도 ‘전자 인감도장’과 ‘전자 인감증명서’ 발급체계를 정통부가 주도하여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초기에는 민간기업이 발급한 ‘사설인증서’와,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공존
- o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1,000만개 보급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인인증서가 모든 거래의 주체로 등장
 - 은연중에 사설인증서는 공인인증서에 비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하면서 사설인증서는 거의 사라지게 됨
 - 사설인증서나 공인인증서의 차이는 발급의 주체(개인 혹은 정부)이며 기술은 동일

2. 공인인증서의 역할과 효과

□ 공인인증서의 역할

- o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에서 본인확인과 서명 기능을 하는 사이버 인감
 - 공인인증서의 도입 목적은 초창기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기술

□ 국내와 해외의 인터넷 뱅킹 구현 방법¹¹⁾

- o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
 - ① 암호화 전송기술
 - ② 사용자 인증
 - ③ OTP(일회용 암호)
- ⇒ 공인인증서는 ①과 ②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11) IT동아(2014.3.25), “바보야, 문제는 액티브X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야” 발췌 정리

o 암호화 전송기술

- 외국은 SSL로 해결
- 인터넷 초창기에는 공인인증서가 SSL보다 안전했다는 평가
- 현재 SSL가 기술 진화를 거쳐 2012년초 256비트로 강화

o 사용자 인증

- 국내는 인터넷뱅킹시 사용자가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발급받는 것이 공인인증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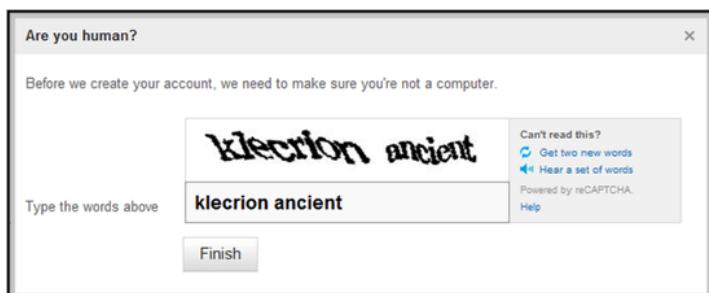
※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의 5곳

- 외국은 사용자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자가 접속한 홈페이지에 대해 국가가 아닌 공신력있는 제3자가 인증해주는 방식

※ Verisign, Comodo 등이 제3의 인증기관으로 EV SSL 인증서 발급.

- 국내에서는 사용자가 본인인증을 받기 때문에 금융거래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외국은 홈페이지 자체를 인증받기 때문에 피싱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o 은행 거래 시 국내의 경우에는 ID/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라는 삼중 보안을 취하며, 해외의 경우 은행 ID/비밀번호, OTP라는 이중 보안을 기본으로 함
- Bank of America는 은행 ID/비밀번호, OTP 이외에 은행에서 이미지 패스워드 활용



[그림 2-2] 이미지 패스워드 예

□ 공인인증서의 현재 문제점

- o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정부에서 공인하는 방법
 - 보안 사고 발생시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이중삼중의 본인 확인 프로세스를 정부 주도하에 강화
- o 금융거래 사업자들은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 보안 대책을 따르면 거래 사고에 대한 면책되는 부가효과를 얻음
 - 정부에서 기업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변질되며, 기업에게 면죄부 제공
 - 기업들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보안에 대해 매우 허술하게 대응
- o 정부에서 공인하는 공인인증서의 대체 기술은 사실상 없는 구도
 - 전자금융거래법은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갖춘 인증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법이 개정된 지난 4년 동안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인증 기술은 단 한 건도 전자금융거래인증방법평가를 통과하지 못함

3. 공인인증서 완화에 대한 제언

□ 민간시장에 대해 정부는 개입·보증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중심의 위상 정립 - 공인인증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부 철학의 문제

- o 단시간의 경제·산업 성장에는 정부의 역할이 지대한 공헌
 -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테니, 기업은 따라오기를 바라는 개발·성장 논리가 대단히 구체적인 규제나 단일 기술의 활용 환경을 가져옴
 - 공인인증서와 같은 통일한 규제와 확산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성장과 보안을 동시에 이룬 것은 사실
 -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나 정부 3.0 등이 공인인증서 등에 의해 초기 성장이 가능했던 점은 인정됨

- o 그럼에도, 기술, 기업역량, 글로벌화 등은 기존의 우수한 정책을 낳은 규제로 변모시키는 결과 초래
 -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보증하는 시스템에 익숙하여 자체적이 보안 노력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
- o 정부가 보증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할 시점임
 - 정부는 정부업무 이외에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점차 줄이고, 침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관리 비중을 높여야 함
 -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안투자에 대해 강화하고, 관련된 R&D의 활성화도 가져오는 파급효과 기대 가능

□ 공인인증서의 대체가 아닌 다양한 인증 기술을 정부차원에서 적용 확대

- o 국내의 많은 거래가 공인인증서 기반하에 확대·발전하는 추세
 - 공인인증서의 계속적 활용은 결국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해보임
- o 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정부3.0이나 민원 처리시 적용하여 안정성을 검증 받는 단계를 통해 다양한 인증기술의 활용성 제고

<참고> Active X

- o 액티브-X는 초기 텍스트와 이미지만 읽을 수 있었던 웹 브라우저에 동영상 재생이나 데이터 암호화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보조 프로그램(플러그인)
- o 플러그인에는 액티브X, NPAPI, 자바애플릿, 플래시, 실버라이트 등과 같이 다양함
- o 다만, 여러 플러그인 중에서 MS의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액티브-X가 가장 많이 사용됨
- o 최근 HTML5가 도입되면서 Active X의 사용예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공인 인증서를 고수할 경우에는 Active X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함
 - 국내에서 은행 뿐 아니라, 관공서 등에서도 독자적인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HTML5가 확산되더라도 Active X는 지속적으로 활용될 전망
 -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11을 공개하자 한 언론이 인터넷 익스플로러11(모던UI 버전)에 액티브X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도. 여기에 액티브X에 활용하여 웹 서비스를 제공 중인 관공서, 은행, 기업들이 반발하자,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11(데스크톱 버전)에 액티브X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한 해프닝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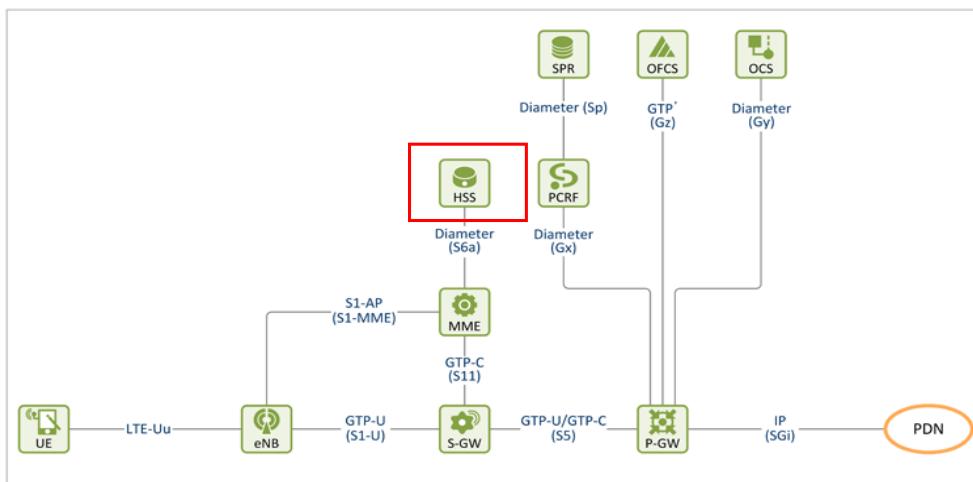
제 3 절 SKT 통신망 장애의 원인 및 대책

1. SKT 통신망 장애의 기술적 접근

□ SKT 통신망 상태에 대한 문제점

o SKT 통신망 사태 원인

- 2014년 3월 20일에 발생된 SKT 통신망 장애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나타남
 - ① 가입자의 이동성과 위치를 관리하는 HLR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가입자 접속 불가
 - ② 24분 만에 장애를 복구하였으나 그 사이에 사용자들의 계속되는 통신망 접속에 따라 과부하 발생
 - ③ HLR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트래픽(음성통화 및 인터넷 접속 시도 등) 집중으로 5시간 정도 장애 지속됨



[그림 2-3] LTE 네트워크 구조

* HSS (Home Subscriber Server)의 구성

- Permanent and central subscriber database
- Stores mobility and service data for every subscriber
- Contains the Authentication Center (AuC) functionality

- HSS는 UMTS Rel. 5에서 정의되었으며, HLR(Home Location Register)과 AuC 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HSS는 일반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와 이동성에 대한 처리 기능을 제공
- ※ LTE에서의 정보 변경은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에서 S6a (Diameter) 인터페이스를 통해 HSS에서 변경이 됨
- HLR는 단말기의 위치 정보와 가입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위치등록기로서 LTE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임
- ※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Rel. 5 :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고속하향패킷접속) 기술을 위한 규격으로서 하향으로 최대 14.4Mbps, 상향으로는 2Mbps의 속도 제공. LTE 관련 규격은 Rel. 8에서 정의

□ 통신 사업자들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 등

o 문제점

- 중요 장비들에 대한 이중화 구조 고려 안 됨
- SKT내에서의 호 연결뿐 아니라 타 통신사에서 S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 또는 신호음 없이 전화가 끊기는 경우 발생

o 대처방법

- HLR과 같은 주요 통신망 장비는 반드시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또는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시 자동 이중화 절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통신망 계위(기지국/네트워크/HLR 등)에 따라 세밀한 트래픽(통화량) 제어가 가능해야 함
- SKT 내에서의 호 연결뿐 아니라 타 통신사에서 S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적절한 안내(가급적 장애 원인 포함) 메시지가 나와야 함

※ 예를 들어, ‘HLR 복구 중’, ‘트래픽 처리 용량 초과로 인하여 접속 불가’ 등

2. S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제도적 접근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방안

o 수요자 중심의 피해액 산정 방법 고찰 필요

- 약관의 배상 기준은 통신사의 공급 행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구도

※ 예를 들어, “약관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 등의 표현은 통신사 입장에서의 표현에 가까운 지침

- 이동통신을 생업을 위한 주요 매개체로 활용하는 직업군(대리기사, 이통기반 배달업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 통신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관 등을 설립하여 피해에 대한 단체 소송 등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배상제도 필요

o 정부 측면에서 통신망 투자에 대해 SLA를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망투자 독려

- 모바일 환경의 성숙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장애는 국민의 편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 Best Effort에 기반한 설계가 아닌 SLA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망 투자 계획을 정부에서 독려

<참고자료 1> 국내 통신서비스 장애 배상 제도 현황

□ 통신망 장애 시 배상을 위한 제도

-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가입시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약관(約款)을 통해 계약 체결

-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
 - ☞ 보통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은행·운송·통신 등의 사업자가 대량거래의 수요에 대응하여 같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계약절차 때문에 거래가 자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미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은 것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규제 제도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을 두고 있음
 - 구체적인 조문을 두기보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에 성실을 다해야 함을 담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함(제33조)을 원칙으로 하며, 금지행위(제50조)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 그럼에도,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이용자보호 규정이 미진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보상은 약관을 활용

법 제33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생략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7.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용자에 대해서 약관의 설명, 고객의 권익 보호 등의 조항을 두고 있음
 - ☞ 통신서비스 장애 등 적극적인 조항은 보이지 않으며, 원칙론에 입각하여 조문을 두고 있음
- o 약관의 단점
 -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유무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약관 내용의 변경은 어려움
 - 사업자가 자사에게 유리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이용자는 이를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적 수정이 쉽지 않은 설정이라, 이용자에게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면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장애 배상제도

- o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의 형태로 각 사업자의 이용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o 각각의 사업자별 손해배상 규정은 손해배상의 발생 조건, 장애 발생 시간의 계산시점, 장애배상의 시간, 배상의 수준, 배상의 절차 등으로 구분
 - 손해배상의 발생 조건 :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장애발생 시간의 계산 시점 : 이용자가 그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 장애배상의 시간 : 이용자가 그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이동통신 3사가 약관에 동일하게 규정)

<표 2-6> SKT의 약관

제 33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배상의 수준 :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 배상의 절차: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하며,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o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SLA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배상을 실시¹²⁾
- 특징적인 점은 서비스 중단과 같은 장애 발생 시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장애의 유형, 수준 및 기간에 따른 배상규정도 두고 있음
 - 이처럼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 장애에 대한 기준과 배상 기준은 해외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구체적인 조항을 둔 형태
 -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통신서비스 장애 시,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상수준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용약관상의 SLA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o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배상처리 된 장애건수는 총9건으로 장애 피해인원은 1,217,506명, 총 피해 배상액은 약29.7억 원 수준으로, 장애별 평균 배상액은 3.3억 원으로 1인당 2,441원이 배상

12)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2012.11),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서 발췌 요약 정리

<표 2-7>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별 장애발생 및 배상 현황(2009. 1~2012. 4)

구분	국내 이동통신사			
	장애원인	장애유형	장애지역	장애배상
SK텔 레콤	기지국 SW 오작동 (2011.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불가 및 품질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270분 – 146건 	서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일부지역	5,098원 총 744,261원
	HLR H/W 오동작 (2011.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불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100분 – 145건 	지역 상관없이 HLR에 포함된 국번의 일부 가입자들	15,110원 총 2,191,022원
KT	트래픽 과부하 의한 기지국 피해(20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G 통화 부분 불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60분 – 221건 	서울 강남역	952원 총 220,392원
	불량 중계기 장애 의한 피해(20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G 통화 부분 불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120분 – 1건 	서울 삼성병원	4원 총 4원
	트래픽 과부하 의한 기지국 피해(20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G 데이터호 부분 불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300분 – 3건 	서울 서울대	34원 총 102원
	◦ 성능개선 작업중 오류에 의한 기지국 피해(20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G 통화 부분 불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25분 – 3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9원 총 27원
	비상조명등 누전에 의한 서버피해(20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서비스 등 서비스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359분 – 138,820건 ◦ 데이터서비스 등 서비스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359분 – 287,808건 	–	1,000원 총 138,820,000원 – 1,150원 총 331,075,000원
LG 유플 러스	구글 서버에서 과부하 트래픽 발생(201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통화 완전 불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시간: 540분 – 790,000건 	◦ 전국	3,165원 총 2,500,000,000원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2012.11)

〈참고자료 2〉 통신망 장애에 대한 해외사례 13)

□ 전반적인 현황

- 각 국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사례와 배상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요금, 가입해제 등과 같이 개인과 사업자 간에 이용약관에 근거한 피해사례가 주를 이룸

<표 2-8> 해외 이동통신사 약관

	해외 현행 약관(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
① 장애 발생의 계산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T(미국)<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회사에 통보한 후부터○ Telstra(호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가 회사에 결함을 언급한 후부터 모바일 서비스가 복구될 때까지 회사는 복구 진행의 매 48시간마다 이용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함○ Optus(호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에 결함을 통보하기 전에 귀하는 반드시 결함요인을 철저하게 확인한다. 귀하 소유의 장비나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Vodafone(호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귀하가 원하는 특정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④ 배상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Verizon(미국)<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지역에서 2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지속될 경우○ AT&T(미국)<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중단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NTT docomo(일본)<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서비스 중단을 인지한 시간 24시간 이상 연속될 경우 (※ KDDI(일본), Softbank(일본) 이와 동일)○ Telstra(호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기준 근무시간(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공휴일 제외)동안 모바일 네트워크에 발생 한 결함을 수리하고 모든 서비스를 복구함

13)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2012.11),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서 발췌 요약 정리

④ 배상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서비스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월 서비스 수수료 환불액을 적용 ◦ NTT docomo(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회사가 인지한 시간 이후, 중단된 상태 시간을 계산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Softbank(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기 전 6개월 간의 하루 평균 사용료로 산정) ◦ Vodafone(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환불함 - 회사가 먼저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장치를 검사 및 고장을 수리하고 서비스에 업그레이드등이 필요한지 확인함
⑤ 배상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rizon(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간 내에 본사에 전화로 배상청구

□ 미국

- 미국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데이터 이용요금 및 기기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용자가 신뢰할 수 없는 이용요금이나 약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불편, 약정에 세부내용 미고지 등이 세부적인 피해사례
- FCC는 이용 약관에 명시된 관련 피해의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
-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피해 발생 시, 이용자는 Consumer Union 가입을 통해 이용자가 처한 피해 사례를 신고 · 작성
 - Consumer Union은 사건 및 사고내용을 중심으로 동일한 피해 유형을 분류하여 소비자를 대변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장애로 피해 받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상황

<표 2-9> 미국 이용자 대표 피해사례

<p>사례 1: The Truth About “Other Charges”, 2011년 1월 28일, Alaba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요금에서 \$20가 더 청구되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알아보니 이 요금은 Verizon의 재산세, 세금 및 간접비를 포함한다고 했으며, 이것 현행법상 합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입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p>사례 2: Phone Company Ripoffs, 2009년 9월 24일, Georg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에 따라 휴대폰의 전체금액을 내지 않고 휴대폰을 바꾸기 어렵다. 또한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새로운 기계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현재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만약 새로운 기계로 바꾸려면 많은 위약금을 청구한다. 휴대폰 회사들은 항상 새로운 제품을 팔려고만 할뿐이다.
<p>사례 3: No Phone Compatibility between Service Carriers, 2009년 8월 8일, Arizo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의 엄마가 Alltel의 휴대폰을 약정기간동안 사용하여 기기 작동 방법을 숙지한 상태였다. 마침 약정계약이 만료되었고 엄마는 Alltel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AT&T나 Sprint의 T-Mobile plan(3G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싶었으나 Alltel 휴대폰으로는 T-Mobile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o Verizon과 AT&T는 통화단절과 트래픽 폭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과 관련한 이용약관을 규정하여 이용장애에 대한 배상체계를 마련

<표 2-10> Verizon의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배상 내용

기준	조건 및 배상
일시적 통화장애, 5분 이내 복구	후불: 90일 이내 전화로 배상요구 가능 선불: 45일 이내 전화로 배상요구 가능 배상: 1분의 무료통화권 제공
24시간 이상의 장기적 통화장애	후불: 180일 이내 전화로 배상요구 가능 선불: 해당사항 없음 배상: 장애시간만큼의 Credit 제공

- AT&T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비교적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통신장애에 대한 배상 약관에서는 ‘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월 이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함' 을 규정

- 따라서 명확한 배상내용과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통신장애 정도에 따른 배상을 직접 받아보지 않는 이상 어느 수준까지 이용 장애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가를 짐작하기 어려움

□ 영국

- o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하여 영국 소비자연맹(Consumer Focus)에서는 해당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신고를 수집
 - 이용자를 대변하여 통신사업자 및 정책담당자에게 피해배상에 대한 압력을 행사
 - 영국의 소비자 연맹에서는 피해배상에 대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해 줌
- o Orange는 이용약관의 제18조 1항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신체적 손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위반이나 부주의에 의한 발생손해에 대해 사건 당 최대 3,000 파운드를 한도로 배상 한다는 규정을 명시(Orange 이용 약관 18. 2항)

□ 일본

- o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적기관인 '국민생활센터' 와 민간 소비자 단체인 NACS(Nippon Association of Consumer Specialists)가 존재
- o 국민생활센터에서는 이동통신 장애 및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구축
 -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한 사항, 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 NACS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경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사례를 조사·수집하고, 소비자들의 고충을 상담

해주는 업무를 담당

- 상품 및 서비스, 계약에 관계된 문제 및 의문 등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일반 소비자들의 사례를 종합하여 ‘국민생활센터’ 나 통신사업자들에게 민원을 제출하는 등 압력단체의 역할을 담당
- o NTT DoCoMo는 FOMA 서비스 계약약관의 제76조의 4에 의거하여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 장애배상 시간의 기준은 NTT가 이용장애를 인식한 시간부터 24시간 단위로 배상금을 지급함을 원칙

<표 2-11>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손해배상 약관

SKT	KT	LG U+
제 33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누적 시간이 6 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 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제 4 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1. 개정안의 취지

- o 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첨부 참조)은 최근 이동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조건부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개정안의 검토

□ (용어의 모호성) 제안 이유 중 ‘조건부 신고제’라는 용어에 대해

- o 현행법상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조건부로 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모호
 - 개정안의 내용으로 볼 때에도 조건부라고 하기보다는 신고를 받으면서 후에 이용약관 상의 신고 내용을 보완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조건을 붙여서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조건부 허가나 인가는 가능하지만 조건부 신고라는 것은 비논리적) 신고를 받은 후 부당한 내용에 대해 행정청이 판단하여 추후 보완을 명하는 것임(사실상의 인가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됨)

<용어 정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인가(認可)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함o 신고(申告)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함. 영리활동의 경우는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 |
|---|

- o 따라서 조건부 신고제라는 용어보다는 ‘신고제’로 하고, 중요한 사안(개정안

제28조 제2항 1호 및 2호)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논리 구성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 보정(補正):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

- o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시정조치 및 처벌 등에 대한 규정 신설도 필요
 - 예컨대, 동 개선안에서는 14일 이내에 이용약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보완 요구와 그에 대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2차 및 3차 등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함
 -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보완 요구의 필요성 있거나 2차 및 3차에 걸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요구 기간을 더욱 길게 하거나 규제 기관에 의한 이용약관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방안(사후 심사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실무상 시일의 적절성) 개정안 제28조 제2항 본문의 “...14일 이내에 이용약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o 현실적으로 미래부에서 신고된 이용약관의 내용이 동조 동항 1호 및 2호 상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14일의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실무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약관 신고를 하면, 미래부는 동조 동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여 부당한지에 판단을 한 후 보완을 요구하기까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만일 신고 전에 사업자와 미래부 담당자와 사전 교감을 통해 신고 후 14일이면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실상 현행 인가제와 다를 바 없음
 -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이용약관 내용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회 등 별도의 부당성 판단 주체에서 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고려됨

□ (실질적 효과) 인가제 폐지에 따른 이용자의 후생증대 가능성 검토

- o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서비스 품질경쟁 및 요금경쟁의 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와 소비자 후생 증대 목적의 달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실현 가능성성이 낮다고 판단됨

- o 우선, 서비스 품질경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각 통신사별 및 서비스별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 왔음
 - 그 결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제도는 통신사업자들 간의 품질경쟁을 촉발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으며, 현재도 잘 작동하고 있음
- o 둘째, 요금인하 경쟁의 조건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경쟁 및 요금경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요금경쟁이 촉발되는 순간 각 통신사별로 최저요금제로의 경쟁이 전개되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어 요금 하한제 및 상한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필요
 - 현재 서비스 시장의 전개 상 방송 및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와의 관계가 더욱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함. 방송 및 방송통신결합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동 법률의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요금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o 셋째, 개정안의 조건부 신고제는 현행 인가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규제 체계에 포함되고 있다고 판단됨
 - 즉, 매우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현행 인가제 또한 조건부 신고제에 가까운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것임

□ (신속한 내용 공개) 신고제의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제도 강화 필요

- o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요금관련 신고 내용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 사업자간 요금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 즉시 지정된 온라인 등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첨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4. 00. 00.

발 의 자 :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시장은 요금경쟁보다는 과도한 보조금경쟁에 치중하고 있어 이용자차별 사례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이는 현재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도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요금경쟁을 하지 않고 유사한 시기에 담합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으로 전환하여 통신비를 인하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 인가제를 개선하여 사전검토 후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부 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요금규제(신고원칙, 인가예외)를 사전점검을 통한 이용약관 보완 요구가 가능한 조건부 신고제로 일원화하여, 시장경쟁 활성화 및 행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약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여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

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14일의 기간이 도과한 다음날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경우 해당 이용약관의 보완을 완료한 다음날
- ④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및 이용약관 보완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삭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u>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u> <u>(현행과 같음)</u></p> <p><u>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약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u></p> <p><u>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u></p>

	<p><u>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u></p> <p><u>2.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 조건 등이 부당하여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u>3. 이용자와 이용행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우</u></p>
<p>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p> <p>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 비용, 수익, 비용수킹의 서비스 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p> <p>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밖</p>	<p><u>③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u></p> <p><u>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14일의 기간이 도과한 다음날</u></p> <p><u>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경우 해당 이용약</u></p>

<p>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 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p> <p>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 지 아니할 것</p> <p>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p> <p>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 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 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 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 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 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 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관의 보완을 완료한 다음날</u></p> <p><u>④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및 이용약관 보완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p> <p><u>⑤(삭제)</u></p>
---	---

제 5 절 클라우드 컴퓨팅 및 DB 법안 검토

1.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 법안 검토(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 제정안은 미래부가 국회에 기제출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3.10.16 제출)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있어 병합 검토 필요

- 정부안과 비교하여 본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①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 위원회 설치, ②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③클라우드산업 진흥 전담기관 운영, ④클라우드사업의 수요예보, ⑤정보통신자원 등의 임차, ⑥지식재산권의 보호, ⑦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의무, ⑧비밀 업수의 의무 등의 규정(이인용 검토 의견)

<표 2-12> 김도읍의원 제출안에 대한 미래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

□ (안 제7조) 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ICT진흥특별법에서 설치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하므로, 차별화 필요
□ (안 제12조) 표준화의 촉진
○ ICT진흥특별법 제16조(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서 처리 가능
□ (안 제13조·제14조)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조성계획 수립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함께 개정 필요, 인허가 등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안 제15조) 데이터센터의 설립 및 유치·지원등
○ 수행주체를 미래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필요
□ (안 제18조)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구축·활용 확대
○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범위에 민간(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 여부 명확화 필요
○ 클라우드 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운영 지침 도입시는 안전행정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의 일관성과 클라우드 시스템의 특수성 반영 필요

- (안 제19조) 전산시설 등의 구비
 - 전산설비등의 인허가 의제는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법률에 적시하는 것이 필요

- (안 제21조) 세제 지원 등
 - 세제상의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

■ 동 법률(안) 제5조제1항

검토 대상 조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검토 의견

- 다른 법률들을 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3년으로 단축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화 필요
 - 일반적으로 산업이 급속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음
 - 정부가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5년으로 하고 있음(안 제4조)

■ 동 법률(안) 제7조제5항

검토 대상 조항

- 제7조(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위원회) ①~③ 생략
- ④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교육부차관 · 국방부차관 · 안전행정부차관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보건복지부차관 · 고용노동부차관 · 국토교통부차관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2. 클라우드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 |
|--|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된다. |
|--|

□ 검토 의견

- o 제7조제4항제1호는 당연직 위원이고, 2호는 임명직 위원인데, 5항의 규정은 임명직 위원에만 적용될 것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임명직 위원에게만 5항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제7조제6항은 요즘 법률 규정 표기를 능동태로 바꾸는 추세이므로, “한다”로 수정

□ 동 법률(안) 제11조제2항

검토 대상 조항
제11조(클라우드컴퓨팅의 국제협력추진 등) ① 생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 이용자 데이터의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u>지원할 수 있다.</u>

□ 검토 의견

- o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외 이전시 권리 침해 및 악용의 우려가 큰 중요한 내용이므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함

□ 동 법률(안) 제18조제2항~제3항

검토 대상 조항
제18조(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확대) ① 생략 ② <u>공공기관등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야 한다.</u> ③~⑤ 생략

□ 검토 의견

- 제18조제2항은 너무 선언적 규정으로서 불필요하여 삭제하여도 무방. 공정 거래법으로 규제 가능

■ 동 법률(안) 제23조제1항

검토 대상 조항

제23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고도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를 발굴·육성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통일(안 제2조제5호와 용어 통일)

■ 동 법률(안) 제25조제2항

검토 대상 조항

제25조(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의 보호) ① 생략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 표준서비스수준계약서 및 표준계약서를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약관규제법과 충돌 우려
 -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권한 등과의 관계 추가 언급 필요

■ 동 법률(안) 제27조

검토 대상 조항

제27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① 국가는 대기업사업자와 중소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대기업사업자는 중소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표준서비스수준계약 및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검토 의견

o 공정거래법으로 이미 국가가 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중복 규정이 될 수 있음.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동 법률(안) 제13조

검토 대상 조항

제13조(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o 클라우드는 전산시설 등 정보통신자원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요 발생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리적 영향성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짐
- o 제13조에서는 소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단지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 개념에 맞지 않음
 - 오히려, 클라우드 서버를 놓는 단지 자체가 전력 등 연관 기기와 함께 설치되어 단지화가 가능해 보이므로, 클라우드 산업단지라는 용어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기 단지, 집적정보통신시설단지 등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 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으로서,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 법안」과 병합 검토 필요

-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①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의 상용(商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②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볼 수 있음

[표 2-13] 정부 제출안에 대한 미래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

<input type="checkbox"/>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 명확한 규정하여 해석 및 집행상의 모순, 저촉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안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의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안 제4조~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의 클라우드 실태조사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수정○ 제11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수정하고, 지정의 취소, 효과 정지 등의 근거 조항 마련 필요○ 제13조의 수행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안 제8조)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안 제15조) 전산시설 등의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설비등의 인허가 의제는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법률에 적시하는 것이 필요

3.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 법안(김을동 의원 대표 발의)

■ 동 법률(안) 제2조제2항

검토 대상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를 체계적·유기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데이터의 집합체로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에 접근하거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3. 생략
4.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란 데이터베이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검토 의견

o 제2조제2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있으나,

- 저작권법 제2조 19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정 필요

< 저작권법 >

제2조(정의)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예) 데이터의 집합체인지 편집물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활용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통일 필요(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는 것이 결국 검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검색을 활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이 법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당연히 IT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는데 기존의 법률들에서는 DB를 IT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든지,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든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 (예) 대학 도서관의 도서카드, 전화번호부책 등도 DB에 포함됨
- o 제2조제4항의 경제활동을 하는자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사업을 행하는 자'로 표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됨

□ 동 법률(안) 제3조제1항

검토 대상 조항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검토 의견

- o “사항이 포함된” 을 “사항을 포함한”으로 수정

제 6 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검토

1. 법률 일부 개정의 필요성

- o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피해는 점차 가중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차 피해 또한 우려됨
 -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
 -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제공자(예,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마련이 시급
 - 또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입법마련 필요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해외 법률 사례

- o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미국은 정보 보안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기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함
 - 일본에서는 2005년 개인정보유출 방지법을 발효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개인정보유출을 경계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짐
 - 우리나라는 2011년에서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타 선진국에 비해 덜 성숙한 단계
- o (미국) 2013년 4월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법(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이 미국 하원에 통과된 상태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법 1,(A)는 “악의 또는 고의로 공유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의 공개,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 또는 1,000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송비를

배상해야함” 으로 명시 됨

- o (미국) 특정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집단의 1인이나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의 개별적 수권 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의 손해를 청구하는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을 시행
 - (대표당사자소송) 미국에서는 개인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미국식 대표당사자 소송(Class Action)이라 함
 - (대표당사자소송)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a)는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으로 선행요건(다수성, 공통성, 전형성, 적절성) 4개를 모두 충족하고, 유지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대표당사자소송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음
- o (EU) EU는 2012년에 1995년에 제정된 “개인정보지침” 을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을 제정하는 방안 제안
 - (법위반 행위 제재 강화) 감독 당국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25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1%, 또는 1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단체소송 관련 법)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73항에 따르면, 조직 또는 단체들은 이용자들을 대신해서 감독 당국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o (중국)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 감독기관이 없으며,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국가통계국, 상무부 등에서 주관하고 있음
 - (법위반 행위 제재 강화) 규정 위반 시 사전경고 및 1만 위안 ~ 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 o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2012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이드라인을 발표
 - (법위반 행위 제재 강화) 위반행위시 정부위원회는 해당 기업에게 최고 500,000 파운드를 과징금으로 부과 할 수 있음
- o (프랑스) 2012년 5월,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유출 통지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처리법” 제 34조 개정
 - (법위반 행위 제재 강화) 프랑스 범죄 조항 제226.17.1항에 의거하여 5년의 징역 또는 3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함

- o (일본) 일본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에게 번호를 할당해 납세 실적과 연금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공통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개인식별번호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표 2-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법제 동향

국가	주요 법안 내용
미국	<p><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법 (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CIS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사이버 위협정보(cyber threat information)란 다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기업의 시스템·네트워크 취약점 -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위협 또는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이용 - 시스템·네트워크의 기능을 저하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 - <u>시스템·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또는 저장된 정보를 해킹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시도</u> <p>“(d) FEDERAL GOVERNMENT LIABILITY FOR VIOLATIONS OF RESTRICTIONS ON THE DISCLOSURE, USE, AND PROTECTION OF VOLUNTARILY SHARED INFORMATION.—</p> <p>“(1) IN GENERAL.—If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 intentionally or willfully violates subsection (b)(3)(D) or subsection (c) with respect to the disclosure, use, or protection of voluntarily shared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ed under this section,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to a person adversely affected by such violation in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p> <p style="padding-left: 2em;">“(A) <u>the actual damages sustained by the person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or \$1,000, whichever is greater; and</u> “B) <u>the costs of the action together with reasonable attorney fees as determined by the cour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u>악의 또는 고의로 공유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의 공개,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 또는 1,000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송비를 배상해야함</u>

국가	주요 법안 내용
	<p><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p> <p>(a) Prerequisites. One or more members of a class may sue or be sued as representative parties on behalf of all members only i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class is so numerous that joinder of all members is impracticable; (2) there are questions of law or fact common to the class; (3) the claims or defenses of the representative parties are typical of the claims or defenses of the class; and (4) the representative parties will fairly and adequately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lass. <p>(b) Types of Class Actions. A class action may be maintained if Rule 23(a) is satisfied and i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prosecuting separate actions by or against individual class members would create a risk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nconsistent or varying adjudications with respect to individual class members that would establish incompatible standards of conduct for the party opposing the class; or (B) adjudications with respect to individual class members that, as a practical matter, would be dispositive of the interests of the other members not parties to the individual adjudications or would substantially impair or impede their ability to protect their interests; (2) the party opposing the class has acted or refused to act on grounds that apply generally to the class, so that final injunctive relief or corresponding declaratory relief is appropriate respecting the class as a whole; or (3) the court finds that the questions of law or fact common to class members predominate over any questions affecting only individual members, and that a class action is superior to other available methods for fairly and efficiently adjudicating the controversy. The matters pertinent to these findings in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class members' interests in individually controlling the prosecution or defense of separate actions;

국가	주요 법안 내용
유럽연합 (EU)	<p>(B) the extent and nature of any litigation concerning the controversy already begun by or against class members;</p> <p>(C) the desirability or undesirability of concentrating the litigation of the claims in the particular forum; and</p> <p>(D) the likely difficulties in managing a class a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a)는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으로 선행요건(다수성, 공통성, 전형성, 적절성) 4개를 모두 충족하고, 유지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대표당사자소송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음 <p><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EU는 단일 법령안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를 용이하게 하고자 개인정보보호 패키지 개혁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에 제정된 개인정보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폐지하고, EU의 데이터규제에 관한 프레임 워크로 기능하는 규칙 (Regulation)을 신설 - 2008년의 결정(Framework Decision) 2008/977/JHA을 폐지하고, 형사 범죄의 원활한 조사 및 기소를 위해 회원국의 사법당국 간 정 보교환과 협력을 목적으로 한 지침(Directive)을 신설 o EU에서는 2012년 1월 EU 지침(Directive) (95/46/EC)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측면) 27개 회원국에 대해 도일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직접 시행/ 27개 회원국에 독립된 데이터 보호 규제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이 감독권을 행사 -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보장/ 데이터 이동(Data Portability)보장 - (기업에 대한 포괄적 의무부과) 1년에 500명 이상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법인은 데이터 보호관(Data Protection Officer)을 두어야함 <p style="text-align: center;"><i>Article 79 Administrative sanctions</i></p> <p>4.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impose a fine up to 250 000 EUR, or in case of an enterprise up to 0,5 % of its annual worldwide turnover, to anyone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이하 생략)</p>

국가	주요 법안 내용
	<p>5.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impose a fine up to 500 000 EUR, or in case of an enterprise up to 1 % of its annual worldwide turnover, to anyone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이하 생략)</p> <p>6.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impose a fine up to 1 000 000 EUR or, in case of an enterprise up to 2 % of its annual worldwide turnover, to anyone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이하 생략)</p> <p>- (법위반 행위 제재 강화) 감독 당국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25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1%, 또는 1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p>
중국	<p><i>3.4.8. CHAPTER VIII - REMEDIES, LIABILITY AND SANCTIONS</i></p> <p>Article 73 provides the right of any data subject to lodge a complaint with a supervisory authority, based on Article 28(4) of Directive 95/46/EC. It specifies also the bodies, organisations or associations which may lodge a complaint on behalf of the data subject or, in case of a personal data breach, independently of a data subject's complaint. (Article 74, 75, 76은 73관련 세부 조항임)</p> <p>- (단체소송 관련 법)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73항에 따르면, 조직 또는 단체들은 이용자들을 대신해서 감독 당국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중국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약40건의 법률을 비롯하여 30여 건의 법규, 약 200건의 규정이 있음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 감독기관이 없으며,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국가통계국, 상무부 등에서 주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란 특정 사용자를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동의 없이 사용자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다른 이에게 전송할 수 없음 - 정부 수집 시, 정보 수집 · 처리 방식, 내용,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야 함 -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브라우저 설정 또는 세팅 변경을 금지함

국가	주요 법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며, 정보의 공개로 발생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산업정보기술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조사에도 협조하여야 함 - <u>규정 위반 시 사전경고 및 1만 위안 ~ 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u>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998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 · 시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개 등의 활동을 포함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둠 o 1998년에 전면 개정된 “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로 명칭이 변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O는 2012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이드라인을 발표 - “정보보호법” 및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 규칙(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벌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재정 - <u>(법위반 행위 제재 조치) 위반행위시 정부위원회는 해당 기업에게 최고 500,000 파운드를 과징금으로 부과 할 수 있음</u>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78년 “정보처리 ·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적법한 수집 · 처리, 수집 목적의 특정, 정보의 정확성 · 완전성, 민감 정보의 수집 제한, 처리에 대한 본인 동의, 안전 보호 관리 의무, 본인 접근권 등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정보처리 ·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的 운영은 독립행정위원회인 CNIL이 수행(법11조)하며, 이 위원회의 권한 행사에 있어 어떤 기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고 법 제21조에 규정 o 정보처리법 (Data Protection Act) 제34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는 2012년 5월,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유출 통지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처리법 (Data Protection Act) 제34조 개정 - <u>데이터 침해란</u>, 보안체계에 반하는 유출로서 공공분야 전자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불법적인 파고, 손실, 편조, 권한 없는 접근 또는 제공을 의미 - 상기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발생 경위와 해당 법에 따라 지정된 사항들을 컴퓨터 사용 및 CNIL에 서면으로 통지 -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결정된 경우, 암호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CNIL에 통보해야함 - <u>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프랑스 범죄 조항 제226.17.1항에 의거 5년의 징역 또는 3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함</u>

국가	주요 법안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일본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988년 12월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 o 2003년 5월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 o 상기 법은 크게 공공 및 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부분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2005년 4월부터 전면 시행 o 일본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에게 번호를 할당해 납세 실적과 연금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공통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개인식별번호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제 7 절 유료방송 합산규제 검토

1.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규제

□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개요

○ 국내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현황

- 2014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유료방송 총 가입자 규모는 약 2,588만 명 수준임
-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 중, 플랫폼별 시장점유율은 SO 57.4%, 위성 11.9% 및 IPTV 30.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2-15> 사업자별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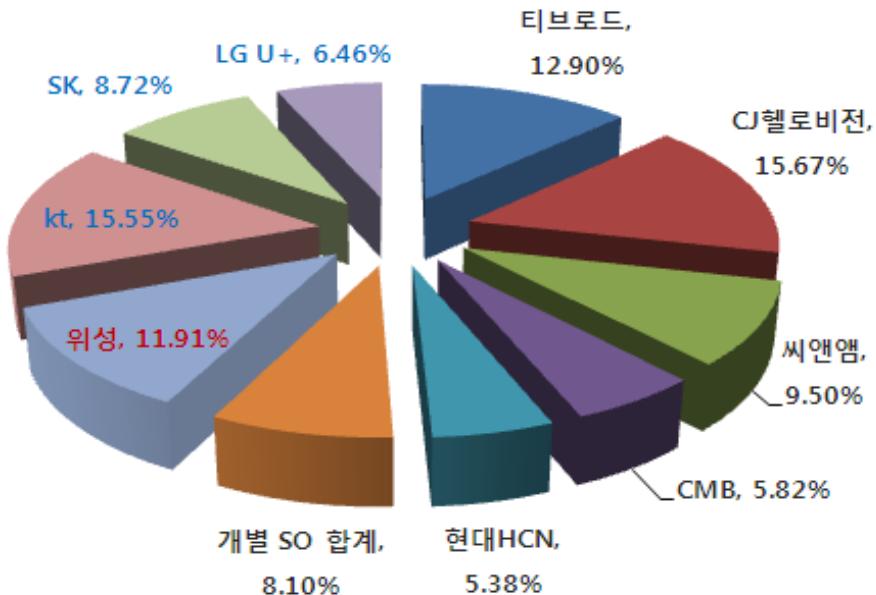
구분	전체 시장		구분	전체 시장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티브로드	3,338,734	12.90%	위성	3,082,762	11.91%
CJ헬로비전	4,054,738	15.67%	kt	4,023,348	15.55%
씨앤앰	2,459,012	9.50%	SK	2,255,532	8.72%
CMB	1,505,028	5.82%	LG U+	1,671,853	6.46%
현대HCN	1,393,045	5.38%	IPTV 합계	7,950,733	30.72%
MSO 합계	12,750,557	49.27%	합계	25,879,094	100.00%
개별 SO 합계	2,095,042	8.10%	* 위성(스카이라이프) 및 KT의 가입자 규모는 중복 계산된 OTS(결합상품) 가입자 약 227만을 각 113.5만 명씩으로 재산정하여 시장점유율 및 비중을 계산하였음	25,879,094	100.00%
SO 합계	14,845,599	57.37%			

자료 : 유료방송사업자별 공시자료 재구성(2014. 03. 기준)

□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목적
 -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지역성 구현 및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음
-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유형
 - 우리나라 방송법 및 IPTV법에서는 매체별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행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매체 간 균형 발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즉, 방송법 및 IPTV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별 점유율 규제는 특정 사업자 내지는 특정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시장 독점을 방지하여 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성방송매체의 특성상 지역제한 자체가 불가능



[그림 2-4] 사업자별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비중 현황

o 유료방송 플랫폼 별 주요 규제 현황

- 케이블TV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독점적 지역사업권에 입각한 소유 및 겸영 규제의 대상이었고,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를 실시
- ※ 국내 케이블방송은 지역으로 구분된 권역별로 독과점형태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 의한 유료방송시장의 장악을 방지하여 다양성을 구현하고자 방송구역 및 가입가구 제한을 실시하였음
- IPTV는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하면서, 방송구역별 시장점유율 제한 및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등의 규제 도입

o 국내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점유율 규제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28일 「방송법시행령」을 개정
- 개정된 「방송법시행령」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 제한은 폐지
- 따라서 MSO 및 개별 SO들은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음

※ 반면에, IPTV 사업자들은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의 1/3 범위 내에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방송구역별 1/3 초과 금지 규제는 적용

<표 2-16>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변화

2014. 02. 05. 이전	2014. 02. 05. 이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초과금지· 전체 SO 방송구역 수의 1/3 초과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1/3 초과금지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 삭제, 제7조 제3호 수정 및 제4호 삭제

* 전체 유료방송은 SO(MSO), 위성방송 및 IPTV 3개 플랫폼 모두를 말함

□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의 검토

- o KT의 OTS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쟁위축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KT의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서비스인 OTS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행하는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들 대비 시장점유율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여 경쟁위축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그 설득력이 없음
 - 최근의 ICT 기술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ICT와 비ICT 간 융·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KT의 OTS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노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경쟁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최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해 1/3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o 동일한 유료방송이면서도 동일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으며, 수평적 규제 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국내 유료방송서비스는 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의 3개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가지 유형 모두가 동일한 유료방송이라는 전제로 동일규제를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3가지 유형의 유료방송서비스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음
- ※ 케이블TV와 IPTV는 유선망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케이블TV는 지역독점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방송을 제작·송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전송만을 수행하고 있는 IPTV와 사업구조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특히, 케이블TV의 수익구조는 가입자의 수신료, 광고 및 기타 방송관련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IPTV는 수신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수익창출 구조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
- ※ 위성방송은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도시지역(특히 다세대 주거단지)에 서비스 난시청지역이 존재는 등 가입자 확보 자체에 제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IPTV가 제공될 수 없는 산간벽지 및 낙도 지역 등에 대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완재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

- o “가입자 합산규제” 주장에 대한 검토
 - KT IPTV 점유율 규제에 특수관계에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가입자 합산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법(홍문종의원 대표발의) 및 IPTV법(전병현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그러나 2014년 2월 5일 이미 「방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의 경우, SO(MSO)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유료방송가입자 전체의 1/3로 규제가 완화되었음
 - 반면에, IPTV 사업자들에 대한 방송구역별 1/3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독점에 기반하고 있는 SO들의 기득권 유지 및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o 한편, 위성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 고려하여 규제 법령의 마련 및 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함
 - IPTV 가입자 수에 위성방송 가입자 수를 합산하여 IPTV 점유율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위성방송이 퇴출될 수 있음
 - KT 스카이라이프가 비록 KT와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위성방송은 IPTV와는 별개의 방송플랫폼이고 위성방송만의 고유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위성방송과 IPTV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합산하여 규제하는 경우, 위성방송 또는 IPTV 어느 일방의 시장이 확대될수록 다른 매체의 가입자 모집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배제를 넘어 경쟁매체 자체에 대한 시장배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 분야에 대한 공정 경쟁의 촉진이 아닌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유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의 새로운 플랫폼 개발유인을 저해하여 기술혁신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플랫폼 출현 및 시장진출을 저해함으로써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특히, 국내 유료방송시장에는 종합유선방송(SO 및 MSO), IPTV 및 위성방송 3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으며, MSO 5개 및 개별 SO 11개, IPTV 3개 및 위성방송 1개의

사업자들이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위적인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경쟁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가입자 합산규제” 주장에 대한 대안

- o 현재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SO 및 IPTV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결하였음
 - 다만,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1/3 초과 금지 규제가 별 의미가 없으나, OTS를 통한 KT의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 요구가 주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재차 제시함
- o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합산규제의 검토 및 대안
 - (현행) SO, IPTV 및 위성방송 모두에 대해 시장점유율 1/3 초과 금지 규제
 - (대안) 현행 규정 외에, 「SO, IPTV 및 위성방송사업자 간에 특수 관계에 있거나 제휴 등을 통해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 또는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1/2 초과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 o 대안 제안의 배경
 - 위성방송의 경우, 가입자 모집의 제약 및 서비스 제공 방법 · 대상 등의 특수 요인을 감안하여 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제한의 완화가 필요
 -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 촉진, 시장 기능 활성화,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시장 내지 플랫폼에 대한 시장배제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 시장 및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고, 시장 지배력의 남용 및 독과점 등의 문제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규율에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 특히, 최근의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공익성이나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장 보다는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경쟁상황 평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시장점유율 규제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표 2-17>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 세계적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기관은 참여지분 제한 또는 시청점유율 제한 등의 규제 실시
- (미국) FCC가 케이블방송 시장에 부과한 시장점유율 30% 제한 규정이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을 받아 폐지
 - 연방항소심법원은 FCC의 30%상한선 규정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규제설정이며, 시장의 병목현상은 단순 가입자점유율보다는 경쟁에 의한 수요탄력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30% 점유율 규제의 무효판결을 내림
- ※ FCC는 케이블방송사업자에 대해 케이블방송 총가입자 대비 30%의 점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케이블산업의 역동적인 시장환경과 경쟁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도였으나, 미국의 최대 케이블사업자인 Comcast는 가입자점유율 상한 30% 규정은 임의적이며, 충분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제소
- (영국)은 2003년 Communic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시장점유율 규제(15%)를 폐지
 -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전송사업자는 방송뿐만 아니라 전화 및 인터넷등 다양한 분야의 전송을 담당하므로 유료방송만의 점유율 규제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임
- (독일) 전국 시청점유율 30%기준을 적용
 - 독일의 ‘방송 국가협약’에 따라 민영방송에 대해 시청점유율을 30%까지 제한하는 규제방식을 채택
- ※ 민영방송 초기에는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상한선을 제한하는 참여지분 제한방식이 사용되었는데, 1987년과 1991년의 방송국가협정은 방송사업자로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민영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 상한선을 제한했으며, 방송 자본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방송 그룹별 소유 지분 상한선을 만들어 통제
 - 시청점유율 규제는 i) TV채널들의 시청점유율이 30%이상이거나 ii) 특정채널의 시청 점유율이 25%이면서 인접 매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경우 iii) 매체 간 결합 시도 시 적용

제 3 장 정부 정책 추진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 1 절 창조경제와 ICT 진흥

1. 창조경제¹⁴⁾와 ICT

- o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봉착해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 즉 글로벌 경제상황의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저성장 고착, 실업률 상승, 성장잠재력 하락, 환경·에너지 문제 및 저출산 등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 극복을 주요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음¹⁵⁾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창조경제는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기준과 다른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설정 과정에서 등장
- o 한편, 창조경제에의 접근 방법은 창의성 기반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창조 경제에의 접근 방법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 내지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에는 산업 및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현 경제체제 내에서의 협안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구체적 대안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o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성장 모형도 요소투입 중심의 생산성 증가 실패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그 개선이 협안으로 대두되어져 있음
 - 즉, 우리나라도 과거의 양적 성장의 한계와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 정부 들어 ICT 경쟁력의 하락 및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질적

14) “창조경제”는 2001년 Howkins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역설하면서 사용한 “창조적 경제(The Creative Economy)”의 개념에서 처음 태동하였으며, 2002년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Richard Florida 교수가 펴낸 “창조적 계급의 등장(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이라는 저서를 통해 국내에 널리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KCA(2013.03), 창조경제의 개념 및 역할, 이슈포커스, p.11). 다만, 노무라총합연구소에서 1999년에 정보사회를 잇는 패러다임으로 “창조사회”를 제시하는 등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논해져 왔다고 할 수 있음.

15) 김국진, ICT와 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 법제연구 제44호, 한국법제연구원, pp.11~13.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창조경제” 가 논의되고 있음

2. 창조경제와 그 실현수단으로서의 ICT

- o 우리나라는 ICT 분야의 R&D, 산업 진흥 및 규제 정책의 수립·시행 및 법·제도 집행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로 관장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은 다른 국가 및 타부처와는 달리 과학기술과 ICT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 큰 차별성이 존재¹⁶⁾
 -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개념도 과학기술과 ICT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에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해외 주요국 및 기관들과 큰 범위 내에서는 일치하고 있음¹⁷⁾
- o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달성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와 콘텐츠의 핵심 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및 국민을 위한 과학 기술과 ICT구현을 미래창조과학부 5대 전략으로 하고 있음
 -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제시하였던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6가지 전략, 즉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및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전략 등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음
- o 정부는 2013년도 하반기에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3.10.23.)를 개최하여 부처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인 “ICT웨브 전략” 을 발표하고, 동 전략에서 정안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¹⁸⁾
 - 동 전략에는 SW 기반의 5대 분야, 10대 핵심기술 및 15대 미래서비스 개발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16)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정의(미래창조과학부(2013.07),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p.26)

17) 자세한 것은 KCA(2013.03), 창조경제의 개념 및 역할, p.16이하 참조

18) 자세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2013.10.23),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p.11이하 참조.

- o 한편, 2014년에 들어와서는 ICT 분야의 진흥·활성화를 위해 ICT R&D 및 관련 산업분야의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ICT R&D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2014년 6월 「창조경제를 위한 ICT R&D 규제개선 방안(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별적인 규제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3년 제정된 ICT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2014년 5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안)」을 마련하여 ICT 분야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미래부 스스로 내지 각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규제 및 법·제도 개선

- o ICT 및 ICT 기반의 융·복합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은 과학 기술 및 ICT 발전에 따른 시장경쟁 등에서 발생하는 현안 과제와 현행 법·제도 간의 불균형 내지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한 발전이 일상화되어 있는 ICT 분야의 진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음
- o 따라서 ICT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규제 및 법·제도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기업과 국민들에게 필요최소한의 사전적 및 사후적인 측면의 법·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즉, 신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및 법·제도의 개선과 신제품·서비스 출현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진흥 및 표준화 등에 필요한 법·제도의 마련 모두가 필요
 - 특히,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ICT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내지 역기능을 해소함과 아울러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및 신제품·서비스 제공을 지원시키거나 가로막는 폐해 최소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중요
- o 한편, ICT R&D 구조 개편 및 안정적인 R&D 환경 조성을 통한 ICT 분야의 신기술

개발 장려와 진흥책을 수립·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이 필요

-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등 ICT R&D 성과 활용 및 관리 환경 제고
 - ICT R&D 분야 및 목적 등 특성에 따른 평가·관리 제도의 도입 또는 마련 등 전주기적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 ICT R&D 성과화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신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o 이에 이하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 성과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음
-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ICT 분야의 규제개선 및 법·제도 개선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제 2 절 ICT 분야에 대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동향

1. ICT 관련 조직 및 법령 현황

□ 현 정부의 과학기술 및 ICT 관련 부처의 통폐합

- o 현 정부는 2013년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의 주무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폐합하여 신설
 - 지난 정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던 과학기술, 지식산업, 정보 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켰음
 -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성장 둔화 개선 등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
- o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및 ICT 기능, 정책, 각종 규제 및 법령 제·개정 업무 등을 제1차관과 제2차관이 각각 나누어 관장하도록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제1차관이, ICT 분야에 대해서는 제2차관이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아래에 실·조정관 4, 국·관 21 및 과·담당·팀 70개 조직에 정원 총 78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 미래창조과학부 조직 및 주요 기능

조직		주요 조직	주요 소관 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 연구개발정책실 - 창조경제기획국 - 과학기술정책국 - 연구개발조정국 - 성과평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예산 배분 · 조정 · 평가 • 기초 · 거대 연구개발 정책 •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및 산업기술 R&D • 산 · 한 · 연 협력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육성 · 지원 • 과학벨트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 • 지식재산 전략
	제2차관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방송정책실 - 미래인재정책국 - 정보화전략국 - 통신정책국 - 방송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융합 · 진흥, 전파관리 • ICT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 SW산업 · 융합 • 국가정보화기획 · 정보보안 · 정보문화 • 디지털 콘텐츠

□ ICT 관련 정부조직 및 소관 법령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도 ICT 분야에 대해서는 제1차관은 과학기술 및 성과평가 등을, 제2차관실은 ICT 정책 및 제도 수립 · 시행과 법령의 집행 및 제 · 개정을 담당하고 있음
 - 제1차관실은 과학기술기본법외 35개의 법률 및 관련 하위 법령을 관掌하고 있음
 - ICT를 담당하고 있는 제2차관실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외 17개의 법률을 관掌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고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2014년 17개에 대비 1개의 법률이 증가

<표 3-2>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관련 법률 현황

조직		주요 소관 법률	
제2차관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국가정보화기본법 -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통신 기본법 - 전파법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 ·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법 - 인터넷멸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o 한편, 2013년 ICT특별법을 제정하여 ICT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간사로 하여 ICT 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2013년 ICT 특별법 제정이후, 동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안)』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음

2. ICT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현황

□ 제19대 국회의 법률 제·개정 현황 총괄

- o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4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제19대 국회(2012년~2016년)의 법률의 제·개정 추진 건수는 총 12,13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⁹⁾
 - 그 중 처리된 건수는 3,329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결 1,365건, 부결 1건,

- 폐기 1,833건 및 철회 130건으로 조사되고 있음
- 총 접수건수 대비 처리 건수의 비율은 약 27.4%이며, 72.6%는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표 3-3> 제19대 국회의 법률 제·개정 현황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계	원안	수정		계	대안반영 폐기	폐기		계류	
의원발의	11,397	2,956	1156	759	397	1	1,669	1596	73	130		8,441
정부제출	734	373	209	73	136		164	163	1			361
총계	12,131	3,329	1365	832	533	1	1,833	1759	74	130		8,802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재구성

- o 한편, 2012년 6월 이후 국회에 접수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 제·개정안 발의 건수는 481건임
 - 처리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가결 43건, 부결 0건, 폐기 101건, 철회 3건 및 미처리 계류 334건임

□ ICT 분야의 법률 제·개정 현황 분석(미래부 제2차관실 소관 법률)

- o 제19대 국회의 ICT 분야 법률 중 국회에서 가결된 43건의 제·개정 법률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가결된 43건 중 원안 가결된 건은 30건이며, 수정 가결된 건이 13건임

※ 다수의 법률 제안 건수 중, 심의 과정에서 소관 소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대안을 제시하여 가결된 건도 원안가결로 분류

1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AGE=19-20160529>

<표 3-4> 원안 가결된 법률 처리 현황

의안 명	제안일자	처리일자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7-15	2014-09-30	공포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7-15	2014-09-30	공포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7-14	2014-09-30	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2014-05-02	공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2인)	2014-02-17	2014-05-02	공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2013-10-30	2014-09-30	공포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2013-10-30	2014-09-30	공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2013-10-30	2014-09-30	공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2013-10-30	2014-09-30	공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07-01	2013-07-02	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07-01	2013-07-02	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07-01	2013-07-02	공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2013-06-12	2013-07-02	공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2013-03-18	2014-05-02	공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2-07-23	2013-04-29	공포

<표 3-5> 수정 가결된 법률안 처리 내역

의안 명(제안자)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 결과	현황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3-09-10	2014-09-30	수정가결	공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2013-09-10	2014-09-30	수정가결	공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3-09-10	2014-09-30	수정가결	공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3-09-10	2014-09-30	수정가결	공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3-09-10	2014-09-30	수정가결	공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2013-09-10	2014-09-30	수정가결	공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 등 10인)	2013-07-19	2014-05-02	수정가결	공포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1인)	2013-06-13	2014-05-02	수정가결	공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해진의원 등 13인)	2013-06-05	2013-07-02	수정가결	공포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0인)	2013-02-14	2013-12-19	수정가결	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012-11-19	2014-05-02	수정가결	공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장병완의원 등 12인)	2012-08-28	2014-05-02	수정가결	공포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2-07-24	2013-04-29	수정가결	공포

□ 2014년 ICT 관련 제정 법령 현황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의 경우, ICT 분야와 관련하여 신규 제정된 법률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함)」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음
- “단통법”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을 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안 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대리점,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을 허용(안 제4조)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 보장(안 제5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매비용이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점·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안 제9조)

- 누구든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고 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
 -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1조)
 -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는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정(안 제12조)
- o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7조)
 -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 위원회 두고,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직무(안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안 제13조)
 -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14조)
 -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 가능(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2014년 ICT 관련 개정법률 현황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ICT 분야와 관련하여 법률은 「전자서명법」 외 7건으로 총 8건의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4년에 개정된 ICT 관련 법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6> 2014년 ICT 관련 개정법률 현황

의안 명	의결일자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4-09-3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4-09-3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4-09-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4-09-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4-09-3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14-09-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0인)	2014-05-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1인)	2014-05-02

□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인 신규 법률안 현황

- 2012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ICT 분야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률 제정안은 26건으로 조사됨
 -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26건 중 2014년에 발의된 법률 제정안은 다음의 6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최원식의원등13인)
 - 과학기술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김을동의원등12인)

-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안(권은희의원등11인)
- 창조경제선도지역의지정및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병석의원등31인)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폐지 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1인)
- 정보소외계층차별금지에관한법률안(이철우의원등12인)

<표 3-7>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

제안 연도	법률(안) 명 및 제안자	제안 일자
2014년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최원식의원등13인)	2014.08.06
	과학기술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김을동의원등12인)	2014.07.08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안(권은희의원등11인)	2014.07.07
	창조경제선도지역의지정및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병석의원등31인)	2004.05.19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폐지 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1인)	2014.04.16
	정보소외계층차별금지에관한법률안(이철우의원등12인)	2014.04.14
2013년	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법안(김도읍의원등44인)	2013.11.27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2013.10.16
	신지식인육성지원및신지식의사회적공유에관한법률안(김재원의원등56인)	2013.11.20
	미디어교육지원법안	2013.09.17
	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법안(신경민의원등10인)	2013.08.23
	해직언론인등의복직및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노웅래의원등11인)	2013.06.18
	해직언론인등의복직및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최민희의원등10인)	2013.06.18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김을동의원등20인)	2013.06.04
	전북과학기술원법안(유성엽의원등16인)	2013.04.29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안(김성찬의원등32인)	2013.04.18
2012년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안(김장실의원등 10인)	2013.12.28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하태경의원등11인)	2012.10.12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노웅래의원등10인)	2012.08.31

이동통신기기의부정이용방지에관한법률안(강기정의원등10인)	2012.08.07
미디어교육지원법안(최민희의원등30인)	2012.08.03
이명박정권의언론장악관련해직언론인등의복직및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정청래의원 등 27인)	2013.08.02
부산과학기술원법안(김세연의원등16인)	2012.07.27
창원과학기술원법안(김성찬의원등10인)	2012.06.29
한국우주소년단육성에관한법률안(서상기의원등11인)	2012.06.19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안(한선교의원등10인)	2012.06.14

□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개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개괄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원식의원 등 13인이 2014년 8월 6일 제안하였으며, 2014년 11월 21일 미방위에 상정되어 있음
 - 동 법률(안)은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을동의원 등 12인이 2014년 7월 8일 제안하였으며, 2014년 11월 21일 미방위에 상정되어 있음
 - 동 법률(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헌신하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임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권은희의원 등 11인이 2014년 7월 7일 제안하였으며, 2014년 11월 21일 미방위에 상정되어 있음
 - 동 법률(안)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을 위하여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및 세계적 정보보호 기업 육성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병석의원 등 31인이 2014년 5월 16일 제안하였으며, 2014년 11월 21일 미방위에 상정되어 있음
 - 동 법률(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함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2014년 4월 16일 제안하였으며, 2014년 11월 21일 미방위에 상정되었음
 - 동 법률(안)은 효력이 만료된 법률을 명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관계 법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 적용상 착오를 방지하고자 제안하였음
-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 이철우의원 등 12인이 2014년 4월 10일 제안하였으며, 2014년 11월 21일 미방위에 상정되었음
 - 동 법률(안)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차별없는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56인이 2013년 11월 20일 제안하였으며, 2013년 1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부가 2013년 10월 16일 제안하였으며, 2013년 10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2013년 11월 27일에는 김도읍 의원 등 44인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을 제안하여 소관위에서 심사 진행 중에 있음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 김희정의원 등 11인이 2013년 9월 17일 제안하였으며, 2013년 11월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법(안)」
 - 신경민의원 등 10인이 2013년 8월 23일 제안하였으며, 2013년 8월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

-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 김동의원 등 20인이 2013년 6월 4일 제안하였으며, 2013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김장실의원 등 10인이 2012년 12월 28일 제안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안)」
 - 장기정의원 등 10인이 2012년 8월 7일 제안하였으며, 2012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 최민희의원 등 30인이 2012년 8월 3일 제안하였으며, 2012년 8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 한선교의원 등 10인이 2012년 6월 14일 제안하였으며, 2012년 7월 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절차 진행 중에 있음
- 기타 특수 분야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 8건이 심의단계 진행 중에 있음
 -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하태경의원 등 11인, 2012년 10월 15일 제안)
 -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노웅래의원 등 10인, 2012년 8월 31일 제안)
 -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의원 등 27인, 2012년 8월 2일 제안)
 - 부산과학기술원법안(김세연의원 등 16인)등 지역의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 4건
 -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의원 등 11인, 2012년 6월 19일 제안)

제 3 절 ICT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현황 분석

1. 정부의 ICT 분야의 규제개선 개요

□ 정부의 ICT 분야 규제개선 개요

- o 정부의 ICT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노력은 ICT R&D 분야와 시장·산업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ICT R&D는 각종 법률 및 관련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반면에 방송통신 분야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규제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ICT 분야의 규제 개선 검토의 한계와 그 개선 방향

- o 한편, 최근의 국내외 산업분야는 ICT 기반의 융·복합 산업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ICT 단독의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의 한계가 빈번하게 초래되고 있음
 - 즉, 단독 부처의 노력이나 단일 산업분야 만의 진흥 및 활성화만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공급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o 이에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노력도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2014년 4월 30일 발족시킨 「미래성장동력추진단」을 들 수 있음
 - 동 추진단 발대식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 부처 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미래부, 안행부, 산업부, 국토부 등 17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임
- o 「미래성장동력추진단」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산업기술혁신계획(산업엔진 프로젝트) 등 정부의 성장동력 관련 정책과 시장의 수요를 검토하여 선정하였음

- 동 추진단의 추진 목표는 2020년 경 국가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에 있음
- 결국, ICT가 모든 산업분야의 기반산업으로 작용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 ICT 분야에 대한 규제 현황의 파악 및 그 개선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그 범위 설정이 곤란한 상황임

<표 3-8> 미래 성장동력 분야별 책임 · 협력 부처

구 분	미래성장동력 분야	주관 부처	비고(협력 부처)
9대 전략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5G 이동통신	미래부 국토부, 방통위, 방사청, 산업부
		스마트자동차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심해저 해양플랜트	산업부 해수부, 미래부
	미래 신시장 선점	지능형 로봇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방사청
		착용형 스마트 기기	미래부, 산업부
		실감형 콘텐츠	미래부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산업부, 환경부
	복지·산업 동반육성	맞춤형 웰니스 케어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산림청, 원안위, 환경부, 방재청, 경찰청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산업부 미래부, 해수부, 환경부
4대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미래부, 산업부	
	융복합 소재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방사청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부	교육부, 국토부 농림부, 산업부, 안행부
	빅데이터	미래부	국토부, 산업부, 안행부, 환경부

* 스마트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맞춤형 웰니스 케어, 지능형 반도체 및 융복합 소재는 책임부처가 복수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05.01.), “미래부-산업부, 공동 추진단 구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협력키로”)

□ ICT 규제개선 검토 방향

- o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ICT 분야의 규제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개선 방안의 도출 또한 곤란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 및 ICT 전반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모든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는 것에는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매우 높은 편임
 - 즉, ICT 분야에 대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산학연 및 출연연 간의 협력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 해결,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 교육, 통신 및 방송 산업의 발전계획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추진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세, 무역, 중소기업 인력문제, 산학연 간의 협력 내지 협동연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2. ICT R&D 규제개선 동향 분석

□ 추진 배경

- o 정부는 2013년 7월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동 계획에 따라 ICT 산업 분야에 관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음
 - 상기 계획의 추진은 ICT R&D 산업 관련 법·제도의 미정비 및 중복적 규제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자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었음
 - 즉, 동 계획은 ICT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하려면 신규 R&D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ICT R&D 규제 개선 절실한 상황을 정부가 인식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대두되었음
- o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고, R&D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창의적·전향적 규제개혁 추진하고 있음
 - 특히, ICT R&D 산업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ICT R&D 규제개선을 통해 R&D 결과물의 사업화 비율 제고, 자율적 성과제고 등 현안 과제의 해결과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ICT R&D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이 가장 중요한 추진 배경임

□ 2013년이후 주요 추진 성과

- o 2013년 7월 발표된 ICT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 현재까지 많은 규제 개선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 특히, 2013년 8월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와 2013년 10월 “ICT R&D 중장기 전략” 및 “SW 혁신전략” 등에서 도출된 R&D 제도 및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R&D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음
- o 주요 ICT R&D 분야의 규제개선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
 - 시장수요 및 SW특성을 반영한 R&D 촉진
 - ICT R&D 기술사업화 촉진
 - 중소·중견기업 참여 여건 개선
 -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 o 시장수요 및 SW특성을 반영한 R&D 촉진 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수요연계형 R&D 촉진을 위해 R&D에 참여한 수요기업(통신사, 제조사 등)이 중소기업의 R&D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 조치(30%)
 - 글로벌 Open R&D 확대를 위해 해당 국가 등의 특성을 반영한 협약체결 허용, 사업비 정산시 해외기관은자체 정산결과보고서로 사업비 정산 대체 등 해외 공동연구 지원 근거조항 마련
 - SW 벤처업 R&D를 허용함으로써 이미 지원되었거나 개발된 SW기술 및 제품에 혁신적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R&D는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음
 - 후불형 R&D 도입을 통해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을 먼저 개발하게 하고 R&D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 o ICT R&D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음
 - 사업화지원 기간을 전체 R&D 기간에 포함(1/6 이상)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
 - 공개 SW를 활용한 R&D를 가능하도록 하고, SW R&D 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근거조항 마련
 - 실시권을 가진 기업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양도 · 실시가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미활용 기술의 활용 촉진 환경 구축

- o 중소·중견기업의 국가 R&D 참여 여건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개선
 - 3년 미만의 설립 초기 법인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정부 R&D에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참여제한 규제를 완화하였음
 - 기준에는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및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R&D 참여를 제한하였으나,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R&D 참여제한 요건을 폐지 하였음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이후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함으로써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음
 -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던 “전문학사 이상”의 조건을 폐지
 - 인건비의 현금지급 인정분야를 기존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SW 또는 설계기술 분야까지 확대하였음

- o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속되어 온 연구자 행정부담에 대한 완화 방안으로 연구비 정산 및 사용 등을 개선
 - 최종 결과평가 우수과제는 외부기관 정산 없이 수행기관 자체 정산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조건으로 현금 및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하여 연구비 사용 제도를 개선
 - 8개 연구비 세목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연구비 사용 기준 제시하여 불인정 기준을 개선
 - 연구비 정산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전담기관별, 위탁정산기관별 상이한 연구비 정산 서류를 표준화하여 연구자 편의 도모

□ 추진 중인 규제 개선

- o ICT R&D 중장기 제도 개선 후, 수요자(연구자) 현장 중심의 니즈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 추가로 도출하여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중소·벤처기업의 R&D 참여기회 확대, 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R&D 성과확산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강화

- 획일적인 사업관리 운영 방식을 벗어나 연구현장 중심의 사업관리 등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 및 창의적인 연구 촉진
 - ICT 융·복합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병행
- o 특히, 정부의 ICT R&D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목표를 “연구현장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창조경제 R&D 구현”에 두고 있으며, 그 추진 분야 및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중소·벤처기업 R&D 투자 걸림돌 제거
 - R&D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비율 완화
 - 중소·벤처기업 R&D사업 참여자격 완화
 - 기업 민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지 고취
 - 수행기관 연구비 편성 및 사용 자율성 확대
 - 수행기관 서류제출 간소화
 - 연구비 정산제도 간소화
 - R&D 지원서비스 강화
 - R&D 성과 확산을 위한 발판 마련
 -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 기술실시를 원하는 참여기업 이의 기업에 대한 실시 허용 확대

□ 향후 추진 방향

- o 앞으로 ICT R&D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통해 산·학·연·관 간의 다양한 R&D 사업의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ICT 기술 및 산업 자체의 특성상 특정 국가 및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차원의 영향이 큰 분야로 국제적인 ICT R&D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o ICT R&D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방송·연극개발 관리규정」을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기 규정들은 현재 ICT R&D 및 산업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분야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한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향후 전면적인 검토·개선 노력이 필요

- 특히, 상기 규정들의 테두리 내에서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국제적인 차원의 연구개발·협력 등을 매우 곤란하게 하여 글로벌 차원의 R&D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그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o 글로벌 및 국내 ICT 산업의 발전 방향, 즉 융·복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ICT R&D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소벤처기업의 R&D 촉진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ICT R&D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촉진 시킬 수 있는 R&D 규제 개선
 - ICT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연구비사용의 유연성·기관 특성 및 추진 R&D 특성 등의 고려가 가능한 R&D 환경 구축 촉진
 - R&D 성과평가, 성과활용, 기술실시 내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구결과 활용 촉진 생태계 구축

3. ICT 산업 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성과 및 검토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4.02)

-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음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수수료를 정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의무 위탁 특례 기한(승인일로부터 3년 후)을 고려하여 적용시기 명시(안 부칙 제2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

- o 제정 배경
 -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지원금의 과다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
- o 주요 내용

-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함(안 제2조)
- (지원금 상한액의 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음(안 제3조)

o 동 규정 규정의 검토

- 동 규정안의 마련에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규정 제정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동 규정 제정안 제2조제1항
 -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에서는 방통위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는 특정 단말기에 대해서는 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음
- 동 규정 제정안 제2조제1항에서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의 “하한액”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동 규정 제정안 제2조제1항의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5만 원부터 35만 원 이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25만 원부터 35만 원 이하”
- 동 규정 제정안제4조
 - 규정 제정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조항이므로 동 규정 제정안 제4조를 단말기 유통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 또는 “이 고시의 폐지 기일”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표 3-9>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1)

구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
지원금 상한액	<p>제2조(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u>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u>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 중략...” <u>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u> ② 부터 ⑦까지 생략</p>	<p>“25만원 이상”을 삭제하거나, “25만원부터 35만원 이하”로 수정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별로 25만원부터 35만원 이하”</p>
해당 조항의 유효 기간	<p>부칙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 까지로 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u>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u>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u> 제2조(별칙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p>	<p>제4조(유효기간) 또는 제4조(이 고시의 폐지)로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정</p>

□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o 제정 배경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 14.10.1.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구매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o 주요 내용

- 공시내용 및 방법(안 제2조) :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공시하여야 함
- 공시장소(안 제3조) : 이통사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공시주기 및 제공(안 제4조) : 이통사는 공시내용을 7일간 유지하여야 하며, 방통위 대리점·판매점에 공시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대리점·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안 제5조) : 대리점 및 판매점은 모든 단말기에 대한 공시내용과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함
- 편철 및 보존(안 제6조) :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공시내용과 게시내용에 관한 자료를 편철하여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함

o 동 규정의 검토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제6조(편철 및 보존)에서는 동 규정 제2조의 공시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하여 3개월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금의 조정 기한을 6개월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존기한도 6개월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2)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검토 의견
제3조(지원금 상한액의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편철 및 보존)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하여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o 제정 배경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 14.10.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긴급중지명령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

o 주요 내용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안 제2조)

- 예산 주기와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래부 지침 통보(4.30)→관계부처 실행계획 제출(6.30)→전략위원회 심의의결(8.31)로 하는 등 실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
- 긴급중지명령의 세부적용 대상 (안 제3조)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전략위원회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 서면통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 제5조)
 -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SW·디지털콘텐츠·정보통신융합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o 동 규정의 검토

- 동 규정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은 단말기유통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중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 제2조의 각 호의 규정들은 “~가 현저한 경우”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 “현저한 경우”라는 함은 법률 등에서 사용하고 그 하위 법령 내지 규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즉, 동 규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중지명령의 발동의 근거가 되는 “~현저한 경우”라는 것에 대한 예시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5.16.)

o 제정 배경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o 주요 내용

-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정조치 관련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 과징금 관련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8조) 등을 규정함

o 동 규정의 검토

- 자료제출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이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 중, “재원별(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 구분한다)”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3-11> 관련 법령 및 개선(안)

법률	시행령(안)	수정안
<p>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내지 ⑤ 생략</p>	<p>제6조(자료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후 45일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량, 매출액: 서비스별로 구분된 단말장치별 출고가: 단말장치별 지원금: 서비스별로 구분된 단말장치별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재원별(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 구분한다), 수령자별(대리점, 판매점으로 구분하되, 대규모 유통업자를 별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p>② 내지 ④ 생략</p>	<p>제6조(자료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후 45일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량, 매출액: 서비스별로 구분된 단말장치별 출고가: 단말장치별 지원금: 서비스별로 구분된 단말장치별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재원별(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 구분한다), 수령자별(대리점, 판매점으로 구분하되, 대규모 유통업자를 별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p>② 내지 ④ 생략</p>

- 시행령 적용에 있어 피규제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아닌 단순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 여부의 검토 및 확인 필요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피규제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 대리점 및 판매점과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피규제대상과 관련하여, 해외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단말기 제조업자와 동일한

규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해외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직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고, 수입업자 등의 다른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 시행령의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o 도입 배경

-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만 가능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존재
- 다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정지를 대체할 제재수단으로 활용
- 이에 방통위에서도 방통위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52조의2)

o 주요 내용

- 금지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신설 (안 제52조의2)
 - 방통위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검토

- (현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서의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은 현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사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사업자의 사업정지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
 - 이에 사업자의 사업정지에 따른 부담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을 추진
- (검토 의견)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일부 법률 규정의 수정이 필요

- 금지행위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은 사업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간접강제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타당한 제도 도입이라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제52조의2 제2항 1문과 2문의 규정을 해석해 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일” 까지이고,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일 사이에 최대 30일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이 명확 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시정명령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 기간을 “시정명령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가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일”부터로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까지 걸리는 기간을 추가적인 유예기간으로 악용하는 등의 규제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라는 취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2>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신설〉	<p>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p> <p>③ 생략</p>	<p>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p> <p>④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⑤ 기존의 ③과 동일</p>	<p>②) 제2문을 ③으로 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추가</p>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11.28)

o 개정 배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14.11.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음

o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개선) 현재 일방향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를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안 제15조제4항)

-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현재 3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1년으로 함(안 제16조제1항)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개정)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조정(별표 8)
- 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별표 9)

<표 3-1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사항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 (제15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정보를 (양방향) 암호화 저장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제1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기존 거래관계 기간의 명확화(제61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래관계에 따라 수신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정함
수신동의 등 처리결과 통지 의무(제6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수신자가 선택한 전자적 전송 매체로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정기적인 수신동의 유지 의사의 확인 의무(제6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동의 유지 의사는 2년 주기로 확인하되,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일자 및 수신에 동의한 내용,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도록 함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별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법률의 과징금 상한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상향(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7%), 중대한 위반행위(2.1%), 일반 위반행위(1.5%))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별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누출 등 통지·신고, ② 정기적인 수신 동의 유지의사 미확인, ③ 수신 동의 등 처리결과 미통지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 과태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함

o 동 규정의 검토

-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은 ‘바이오정보’에 대한 규제 범위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규정을 고시로 함으로써 관련 시장 및 기술 등의 변화에 신속한 규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인정보 유효기간의 단축은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개선이라고 판단됨
- 수신동의 등 처리결과 통지에 관련 규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부적절한 광고 수신 등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정은 법 제64조의3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1%에서 3%로 상향됨에 따라 그 상향비율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한 것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됨
-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 1.나.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권자의 감면 및 가중의 범위를 모두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안)에서는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에서는 감면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가중하는 경우에 한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과권자의 과태료의 감면에 관한 권한의 범위가 무제한의 재량권을 준 것과 같으므로, 이를 기존의 규정 및 가중의 경우와 같이 2분의 1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도 기준과 같이 감면 및 가중 모두 2분의 1로 하고자 한 경우에도 문맥상 감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르면 행정청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감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 참고문헌 >

□ 국내 단행본,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발간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11.8.),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
- 김국진, ICT와 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 법제연구 제44호, 한국법제연구원.
- 김병일·신현문(2012.04),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및 정책 방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7권 제2호(통권 134호).
- 미래창조과학부(2013.06),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 미래창조과학부(2013.07),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미래창조과학부(2013.08.30), 창조경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 미래창조과학부(2013.09),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2013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2014.09),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2014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2013.10.23),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 미래창조과학부(2014.5.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안).」
- 미래창조과학부(2014.6.17), 「창조경제를 위한 ICT R&D 규제개선 방안(안).」
- 민영기(2013.06),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요 및 추진 경과, 한국법제연구원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II) 발표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0.12),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정책연구보고서(10-진흥-가-28).
- 위평량(2011),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분석: 임원의 과거 경력 분석] (경제개혁 리포트 2011-2호. 2011. 3. 21)
- 장원규(2013.03), IT융합과 관련된 기술, 경제, 법적 환경의 변화와 전망 및 개선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2012.11),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 홍범석·전춘미, 중국 정부의 ICT 진흥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Digeco Issue & Trend, 2014.11.10.
- ETRI, 「IT산업 선도전략 연구」, 2008.07.
- KCA(2013.03), 창조경제의 개념 및 역할, 이슈포커스.
- KOTRA globalwindow(2013.08)

□ 국외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등 발간 자료

- 野村總合研究所(2012.03), 平成23年度 知的財産権 ワーキング・グループ等侵害對策強化事業 報告書 .
- DCMS(2011.12.08),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 NITS(2011.9),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 UNCTAD(2010.12), Creative Economy Report.

□ 국내·외 웹사이트 및 기타

- <http://www.assembly.go.kr/main.acl> (국회)
- <http://www.msip.go.kr/>(미래창조과학부)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4.jsp>(국회의안정보시스템)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eative-industries-economic-estimates-december-2011>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국가기록원)
- www.nist.gov
- <https://www.nitrd.gov>
- <http://www.mosf.go.kr/main/main.jsp>(기획재정부)
- IT동아, “바보야, 문제는 액티브X가 아니라 공인인증서야”(2014.3.25)

주 의

1.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